

이 보고서는 「법인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방안 연구」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한 것임

법인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방안 연구

2011. 11.



법인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방안 연구

2011. 11.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정책연구 용역사업으로 수행된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제 출 문

국회예산정책처장 귀하

본 보고서를 귀 국회예산정책처의 정책연구과제
「법인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방안 연구」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1. 11.

한 국 재 정 학 회

〈제목 차례〉

I. 서론	1
1. 연구 배경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II. 사내유보와 관련된 국내 현황	3
1. 사내유보 및 유보자산에 대한 정의	3
2. 기업의 사내유보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 조세회피행위의 일반적 성립요건	4
3. 우리나라의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제도 연혁	7
4. 사내유보 및 유보자산의 현황	8
III. 해외사례	14
1. 미국의 Accumulated Earnings Tax(AET)	14
2. 일본의 동족회사에 대한 초과유보금과세제도	24
3. 대만의 유보된 이익금에 대한 과세제도	31
4. 각국의 유보소득과세제도 비교	32
IV. 법인의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	33
1. 법인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의 의의	33
2. 법인의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의 효과	34
<참고문헌>	59
<부록 1> 대한민국 법인세율의 변화	61
<부록 2> 관련 일본법인세법	62
<부록 3> 미국 AET 관련 IRC 조문	65

-표 차례-

<표 II-1> 국내 전체기업의 사내유보율 현황	9
<표 II-2> 10대 기업 유보율 (단위 : 억 원, %)	13
<표 III-1> 유보금액 구성요소 중 소득 등의 금액	27
<표 III-2> 유보공제액의 기준액 내용	29
<표 III-3> 각국의 유보소득과제 제도	32
<표 IV-1> 회귀분석 결과표 (종속변수: 이익잉여금)	36
<표 IV-2> 회귀분석 결과표 (종속변수: 부채비율)	40
<표 IV-3> 회귀분석 결과표 (종속변수: 회사채)	43
<표 IV-4> 회귀분석 결과표 (종속변수: 고정자산)	53

-그림 차례-

<그림 II-1> 10대 그룹 주요 상장기업의 사내유보금 현황(2007~2008년)	9
<그림 II-2> 10대 그룹 주요 상장기업의 사내유보금 현황(2007~2008년)	10
<그림 II-3> 10대 그룹 주요 상장기업의 이익잉여금 현황(2007~2008년)	11
<그림 III-1> 일본 민간, 가계, 기업의 저축 현황	31
<그림 IV-1> 기업 내 이익잉여금 변화 추이 (전 산업, 1990~2010)	35
<그림 IV-2> 국내 전체기업의 사내유보율 현황 (1990~2010)	37
<그림 IV-3> 기업 내 부채비율 변화 추이 (전 산업, 1990~2010)	39
<그림 IV-4> 회사채 및 이익잉여금 변화 추이 (전 산업, 1990~2010)	41
<그림 IV-5> 기업 내 이익잉여금 변화 추이 (전 산업, 1990~2010)	51

I . 서론

1. 연구 배경

- 법인이라 함은 법에 의하여 인격을 부여받은 주체로서 이익창출이 본연의 임무라 할 수 있음
- 법에 의하여 인격을 부여받는 만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술 혁신으로 수익률이 높은 투자 기회를 발굴해 내고 투자를 확대하여 이익을 창출하도록 기대하는 것이 사회적 통념임
-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속되는 경기불황으로 무차입 경영을 하려는 유인이 강해짐
- 이에 따라 법인은 투자보다는 보수적 경영을 이유로 순이익을 누적시켜 사내유보금이 늘어나고 있음
 - 한국거래소(KRX)의 2008년 말 자료에 따르면, 국내 매출액 1,000대 기업의 사내유보율(자본금 대비 잉여금)은 2008년 669.48%로 2000년 312%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음.(2007년 말보다 27.49% 증가)
 - 이는 법인들이 투자와 고용보다는 유보자산(현금 등) 축적을 선호한 결과로 인식되며, 경제의 선순환구조에 악영향을 주고 있음
- 현행제도는 법인이 유보자산을 투자 및 고용증대에 사용하거나, 현금자산 운용에 사용하거나에 차등을 두지 않고 있음
- 그러므로 법인이 사내유보금으로 적정하게 투자와 고용 창출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유보자산을 고용과 투자로 유도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듦
- 본 연구의 목적은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가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음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법인의 사내유보 및 유보자산에 관련한 선행연구 분석
 - 기존문헌 조사를 통하여 선행연구 분석
 - 순이익을 유보하려는 유인에 대한 미시경제학적 모형 구축
- 현행 대한민국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분석
 - 자료조사를 통한 사내유보금 현황 파악
 - 실제 자료를 사용하여 사내유보금 규모에 대한 실증분석
- 해외 사례 분석으로 시사점 도출
 - 비슷한 사례를 가진 국가들에 대한 문헌조사
 - 미국, 일본, 대만 등
- 기업의 투자행위와 관련된 이론의 검토
 - 문헌조사를 통한 기존 연구 검토
-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가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기업의 투자행위와 관련된 이론에 기초하여 과세의 효과 분석
 - 대한민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

II. 사내유보와 관련된 국내 현황

1. 사내유보 및 유보자산에 대한 정의¹⁾

- 사내유보(혹은 내부유보)란 당기이익금 중에서 세금, 배당금, 임원상여 등 사외로 유출된 금액을 제외하고 회사에 축적된 나머지를 의미함
 - 기업은 경영활동의 결과로 발생된 이익을 다수의 주주에게 배당하여 처분하여야 하나 상법에서는 자본충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일부를 반드시 사내에 유보하도록 되어 있음
 - 이와 같이 기업의 이익처분 중 자본의 누적으로서 사내에 잔존하고 있는 것을 사내유보라 하며, 구체적으로는 법정준비금인 이익준비금, 잉여금 등이 포함됨
- 상법이 적립을 강제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강제의 사내유보와 임의의 사내유보가 존재함
 -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이 전자에 해당하며, 별도적립금 등이 후자에 해당함
 - 강제의 사내유보는 자본전입 및 결손보전 이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나 임의적 사내유보의 사용에는 제약이 없음
- 사내유보(혹은 내부유보)와 자본금, 자본준비금의 합계를 자기자금이라 하며, 총자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회사의 안전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이밖에 각종 특별충당금까지를 포함한 것을 넓은 의미의 내부유보라 일컬음

1) 두산대백과, 매경닷컴

2. 기업의 사내유보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 조세회피행위의 일반적 성립요건

- 경제적 실질에 기초하여 과세, 감면하려는 세법규정
 - 법률회피행위는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회피하고자 하는 “강행법규”가 존재하여야 성립될 수 있음
 - 세법에서 그러한 강행법규는 통상 적극적으로 과세요건을 규정한 법규가 되겠지만, 세 부담의 감면을 규정한 법규도 될 수 있음
 - 세금을 적게 내고자 하는 납세자는 자신에게 적용될 과세요건을 규정한 세법규정이 미 충족 되도록 과세요건에 규정된 것과 다른 세법상의 법률행위방식을 선택하여 거래를 구성하게 됨
 - 그런데 입법자가 세법규정에서 과세요건을 설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어떤 경우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방식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설정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방식 이면에 내재하는 경제적 실질을 과세요건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음²⁾
 - 다만, 후자의 경우에도 입법자는 과세요건을 규정한 세법조문에서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경제적 실질”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설정해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달성함에 있어서 납세자들이 가장 통상적으로 선택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방식을 규정해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음
 - 예컨대, 무상의 자산이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할 때에도 증여세의 과세요건에 “무상의 자산이전”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증여에 의한 자산이전”이라고 규정해 둔다는 것임³⁾
 - 충실하게 세법규정을 이해하다보면 대부분의 세법규정은 이처럼 경제적 실질을 과세요건으로 한 것으로 이해됨

2) 예컨대, 거래세에 있어서 증여는 “증여”라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방식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규정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고, 증여세에 있어서 증여는 그러한 법률행위방식(=형식)이 아니라, 그 이면에 존재하는 경제적 실질, 즉 “무상에 의한 자산가치의 이전”을 과세요건으로 규정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3) 역사적으로 세법이 사법보다 뒤 늦게 생겨난 상황에서 입법자들이 새로운 법개념을 창설하기 보다는 가능한 한 이미 다른 법영역에서 개념정립이 된 개념들을 차용해서 과세요건을 표현하다보니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재인용).

- 하지만 예컨대, 결혼한 부부가 종합부동산세의 합산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서류상 이혼을 한 경우에 있어서 이것을 조세회피행위로 인식할 수 없고, 주주가 1인인 주식회사를 개인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는 이유는 이러한 경우에 결혼 또는 법인이라는 개념은 결혼 또는 법인이라는 사법상의 제도 자체를 전제로 하여 조세입법자가 과세요건을 설정한 것으로 이해해야 하기 때문

□ 이상한 거래형식의 선택과 경제적 합리성의 결여

-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라 함은 세 부담이 절감되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사실적 이유에 의해 납세자가 선택한 행위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을 말함
- 우리 세법에서는 이상한 거래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경우를 “부당히”라는 용어로 표현함

□ 거래행위의 사법적 유효성

- 납세자가 선택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이상한 거래행위가 조세회피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행위가 적어도 사법적으로는 유효한 법률행위임
- 조세회피행위부인의 특색은 이처럼 사법상 유효한 법률행위를 세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음

□ 세 부담의 경감

- 위와 같은 요건이 모두 갖추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세 부담의 경감이 초래되지 않는다면 조세회피행위가 될 수 없음
- 이때 세 부담의 경감에는 실체적인 세액이 줄어드는 것 이외에도 납부 시기가 이연되는 것과 같은 것도 포함된다고 봐야 함

- 주관적 조세회피의도의 필요여부
 - 조세회피행위가 되기 위하여 주관적 조세회피의도가 필요한지 여부가 과거에 논란이 되었는데 현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관적 회피 의도는 조세회피행위 성립요건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음
- 현재 우리 세법에서도 조세회피행위 성립에 주관적 회피 의도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학계와 판례의 지배적 견해임⁴⁾
 - 이처럼 조세회피행위에 주관적 회피의도를 요구하지 않는 이론적 이유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조세회피행위라는 것은 그 본질이 세법 규정의 해석, 적용문제인데 세법규정의 해석, 적용에 개인들의 주관적 의도는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임
- 독일의 경우에는 다수설과 판례가 여전히 조세기본법(Abgabenordnung) 제 42조상의 조세회피행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회피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그 이유는 이 법조문에 “남용(Missbrauch)”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남용이라는 단어가 권리남용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독일 민법 제 226조에서 목적적 행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⁵⁾
 - 처음으로 만들어졌던 1919년만 하더라도 법률회피이론(Gesetzesumgehung)에서도 주관적 회피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 견해이었고, 이것을 그 당시 조세입법자가 반영한 것이었음
 - 하지만, 현재는 독일의 법률회피이론(Gesetzesumgehung)에서도 주관적 회피의사가 필요 없다는 것이 판례와 지배적 학설이므로 세법상 법률회피행위인 조세회피행위에도 주관적 회피의사가 필요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음

4) 임승순, 세법, 2005, 박영사, 663; 대법원 1996.7.12 선고 95누7260판결. 다른 법영역에서의 탈법 행위 요건에도 주관적 회피의도는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설명이다.

5) 독일에 있어서 이 쟁점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참고, 이동식, 독일의 일반규정을 통한 조세회피행위 방지, 공법연구 제 31집 제 4호 2003년, 5, 354면.(재인용)

- 독일의 판례는 주관적 회피의사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객관적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주관적 회피의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해 주므로 실제 사례해결에서는 회피의사를 요소로 보지 않는 견해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

3. 우리나라의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제도 연혁⁶⁾

- 지상배당소득세 과세 (1968~1985)
 - 법인의 이익을 강제적으로 전액 배당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므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시되었음
 - 법인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으나 대신 법인의 이익이 실제로 주주에게 배당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상으로 주주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부과함
- 유보이익잉여금 증가분에 대한 의제배당소득세 과세 (1986~1990)
 - 비상장주식 양도 시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과세하는 방법임
 - 회사의 주주들이 양도를 이용하여 내부유보소득으로 인한 추가상승분을 세금 부담 없이 사실상 배당으로 받게되는 조세회피처가 될 수 있으므로 도입되었음
 - 1990년 12월 폐지되면서 비상장주식의 유상양도에 의해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함
- 비상장대법인 중과 (1982~1990)
 - 납입자본금 50억 또는 자기자본총액 100억을 초과하는 비상장법인에 대해 일반법인보다 3%의 법인세를 중과하였음

6) 유병룡(2007)

□ 적정유보최고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1991~2001)

- 자본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기업경영과 세부 담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도입됨
- 1990년 12월 신설되어, 도입 당시에는 자본금 50억원을 초과하는 비상장대법인과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비상장법인이 적정유보소득을 초과하여 소득을 보유하는 경우 그 초과유보소득에 대하여 25%의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함
- 1993년 12월 개정시에는 과세율이 15%로 인하되었음
- 1994년 12월 개정을 통해 기업발전적립금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상법인을 자기자본총액 50억에서 100억으로 조정함
- 1998년 12월 개정에서는 협회등록법인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2001년 12월 폐지됨

4. 사내유보 및 유보자산의 현황

□ 국내 전체기업의 현황

- 1990년에서 2001년까지는 대체적으로 5% 내외의 사내유보율을 보여주고 있음
- 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폐지된 2002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3배 이상 유보율이 증가하였으며, 2008년 세계적인 금융 위기를 겪으며 잠시 주춤하였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표 II-1> 국내 전체기업의 사내유보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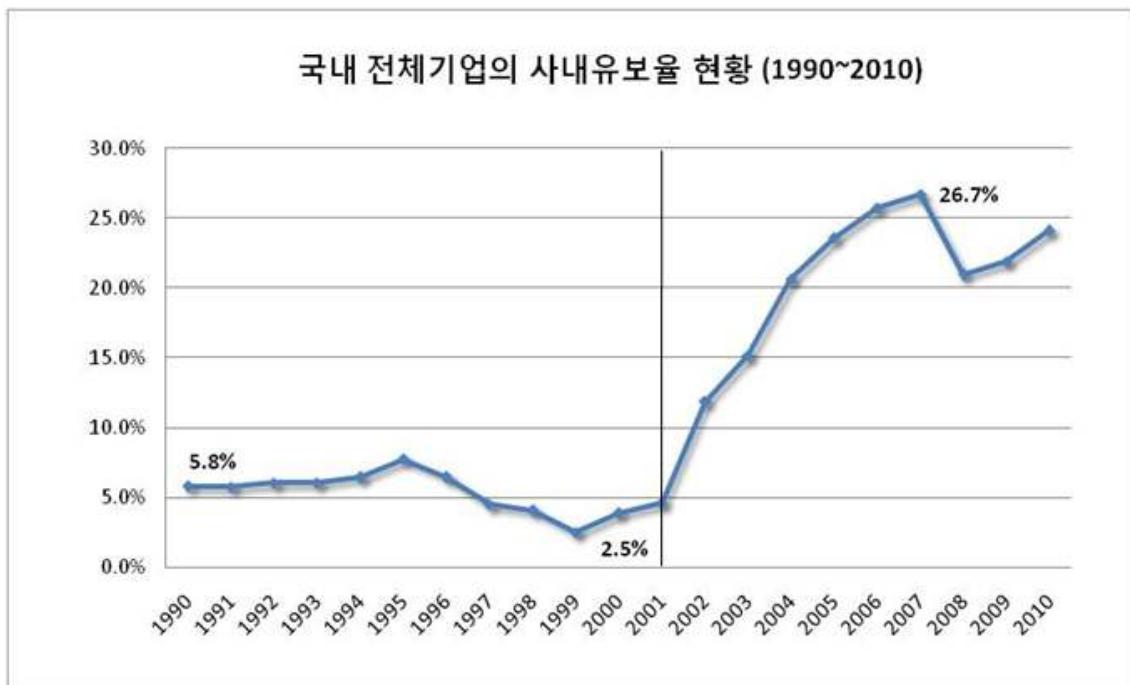
(단위: 백만원)

	자산 총계	이익잉여금	유보율 ¹⁾		자산 총계	이익잉여금	유보율
1990	114,856,336	15,983,868	5.8%	2001	699,608,206	48,438,878	4.6%
1991	136,699,736	19,385,200	5.7%	2002	779,375,011	142,455,015	11.9%
1992	154,728,555	22,729,528	6.0%	2003	814,047,733	195,406,271	15.1%
1993	176,259,271	26,160,014	6.0%	2004	851,827,709	281,067,250	20.6%
1994	207,821,688	34,236,191	6.4%	2005	939,157,762	363,069,192	23.6%
1995	240,063,919	47,490,514	7.7%	2006	1,018,474,771	432,031,504	25.7%
1996	284,726,573	46,049,807	6.5%	2007	723,051,131	499,843,248	26.7%
1997	495,209,983	40,706,831	4.5%	2008	875,055,709	486,308,353	21.0%
1998	554,203,846	38,602,915	4.1%	2009	961,528,030	558,676,321	21.9%
1999	642,620,550	25,747,389	2.5%	2010	1,052,725,791	674,047,576	24.1%
2000	694,669,374	41,039,448	3.9%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주1: 유보율 = 이익잉여금/자산 총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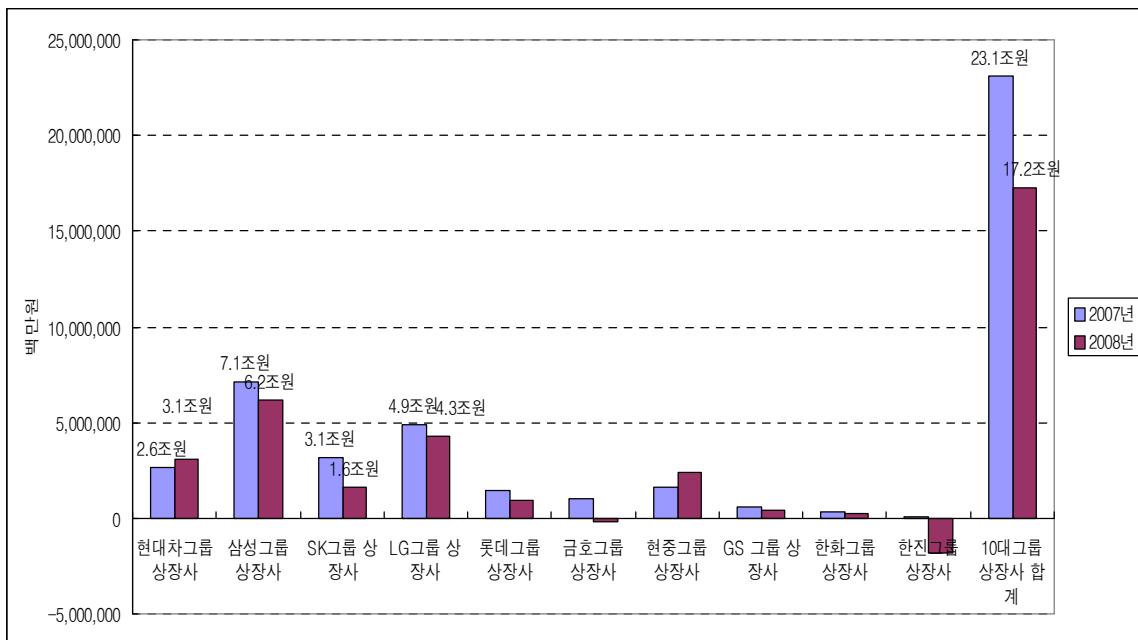
<그림 II-1> 국내 전체기업의 사내유보율 현황 (1990~2010)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 국내 10대 그룹 주요 상장기업 현황은 다음 그림과 같음

<그림 II-2> 10대 그룹 주요 상장기업의 사내유보금 현황(2007-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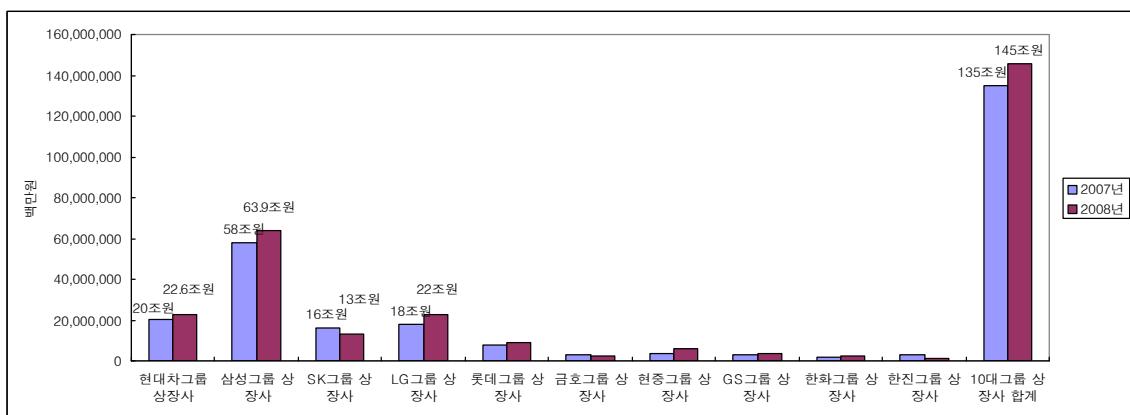
- IMF 외환위기 이후 2000년부터 한국의 재벌(기업집단)은 엄청난 규모의 사내유보금⁷⁾을 축적해온 것으로 평가됨. 10대 그룹의 순위가 약간의 변동을 보이고 있지만, 현대차, 삼성, SK, LG, 롯데, 한진, 한화, 현대중공업 등의 사내유보금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10대 그룹의 64개 상장기업이 사내에 축적하고 있는 사내유보금 총액은 지난 2000년에 6조 7600억 원 이상이며, 이후 해마다 증가하여 2007년에는 약 23조억 원에 이른다. 10대 그룹 가운데 사내유보금액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룹으로는 삼성으로 약 35%(2007년 기준)를 차지함. 현대자동차그룹의 사내유보금액은 10대 그룹 중에서 약 13%(2007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음⁸⁾

7) 기업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이윤을 사외로 유출하지 않고 사내에 축적한 것을 사내유보금이라고 하며, 대개 운전자금이나 신규투자에 필요한 자금의 원천이 됨. 보통 당해연도 당기순이익에서 배당금을 뺀 값임.

8) GS그룹의 경우 GS홀딩스의 대규모 배당금 지출로 (-) 상태임.

- 한편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와 같은 핵심기업이 그룹의 전체 사내유보금과 이익잉여금⁹⁾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아래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현대자동차의 경우 사내유보금은 1조 4064억 원으로 이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사내유보금 총액의 53%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현대자동차의 이익잉여금은 11조 4464억 원으로 현대자동차그룹 이익잉여금 총액의 54%를 차지하고 있음
- 삼성전자의 사내유보금은(2007년 기준) 6조 3269억 원이며, 이는 삼성그룹의 사내유보금 총액 중에서 약 89%에 해당함. 또한 삼성전자의 이익잉여금(2007년 기준)은 50조 9626억 원으로 이는 삼성그룹 이익잉여금 총액의 약 88%에 이를 정도임

<그림 II-3> 10대 그룹 주요 상장기업의 이익잉여금 현황(2007-2008년)



- 2008년 한 해 동안 축적해 둔 10대 그룹(비금융상장기업 기준) 78개 상장기업의 사내유보금 총액은 17조 2000억 원 정도로 추정됨. 2007년 한 해 동안 축적한 사내유보금 총액 23조원과 비교해 볼 때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에 의

9) 기업이 설립이후 벌어들인 이윤 중에서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사내에 누적된 금액을 이익잉여금이라고 함. 이익잉여금은 일정비율의 법정 적립금도 포함되고 기업이 임의로 적립한 금액 등도 있다. 보통 현금이나, 설비 또는 건물과 토지 등의 평가액까지 포함됨.

한 것으로 보임. 실제로 2007년 10대그룹 주요 상장기업(73개사)의 당기 순이익 총액은 28조 5000억 원, 배당금총액은 5조 4000억 원 정도였음. 2008년(78개사)의 경우 이들 상장기업의 당기순이익 총액은 21조 4000억 원, 배당금총액은 4조 2000억 원 정도에 이릅니다.

- 특히 1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 비중은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타 대기업에 비해 유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08년 9월 말 현재 10대 그룹의 유보율은 787.13%로 전년에 비해 67.07%가 증가하였음
- 특히 삼성과 현대의 유보율이 월등하게 높고 대부분 평균 1000%를 상회하는 것으로 드러남. 이는 10대 대기업들의 이익이 급증하면서 잉여금 규모가 자본금의 10배를 웃돌 만큼 자금 여력이 크다는 것을 반증함¹⁰⁾

10) 10대 기업의 이익잉여금 변동추이와 현황 분석 보고서 (2009.4.2), 금속노조정책연구원

<표 II-2> 10대 기업 유보율 (단위 : 억 원, %)

순위	그룹	회 사 수	2007년 말			2008.9월말			증감
			자본금	잉여금	유보율	자본금	잉여금	유보율	
1	삼성	12	46,915	698,548	1,488.97	46,915	757,227	1,614.04	125.07
2	현대중공업	2	4,800	67,148	1,398.92	4,800	79,566	1,657.61	258.69
3	SK	8	11,391	144,603	1,269.51	11,465	146,774	1,280.19	10.68
4	롯데	7	11,421	136,483	1,194.98	11,421	145,891	1,277.35	82.37
5	한진	4	8,405	69,342	824.99	8,792	55,058	626.22	-198.77
6	현대자동차	8	48,156	292,490	607.39	48,156	315,403	654.97	47.58
7	GS	4	7,980	42,425	531.64	7,985	45,569	570.68	39.04
8	LG	10	61,095	224,128	366.85	61,265	279,871	456.82	89.97
9	한화	3	9,122	24,497	268.54	11,142	31,127	279.36	10.82
10	금호 아시아나	6	33,433	48,041	143.69	35,042	87,589	249.95	106.26
합	10대그룹	64	242,718	1,747,705	720.06	246,983	1,944,073	787.13	67.07
합	非10대그룹	495	315,259	1,925,583	610.79	318,119	1,990,539	625.72	14.93

주) 그룹은 공정위가 발표하는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중 상위 10개 기업 집단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 기준)

III. 해외사례

1. 미국의 Accumulated Earnings Tax(AET)

1) 개념

- Accumulated Earnings Tax(이하 AET)는 기업이 사업 확장이나 운영 등 사업과 관련한 합리적인 수요 이상으로 이익을 축적할 경우, 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임(IRS, Pub. 542)
 - 이익유보의 목적이 조세회피에 있지 않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함
 - 미국의 국세청(IRS)은 법인으로 하여금 조세회피 목적의 여부가 아님을 입증하라는 통지를 하며, 만약 국세청이 통지를 하지 않거나 회사가 통지에 대한 반론을 제시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입증 책임을 짐
 - 즉 적정유보소득계산에 있어서 미국은 합리적인 증거만 있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지만 합리적인 증거 없이 유보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으로 간주하여 과세가 가능함
- 미국 세법(Internal Revenue Code, 이하 IRC) 제531조의 1913년 세법(Revenue Act of 1913)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음(김원목, 2007)
 - 해당법에서는 소득을 회사에 유보함으로써 소득세의 회피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그런 사기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회사에 있어서는, 회사소득에 대한 각 주주의 과세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배당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과세할 수 있도록 함
 - 더불어 단순한 지주회사(a mere holding company)하거나 유보액이 사업상 합리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소득세를 회피하려는 사기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함

□ 탈세목적의 검증(The Test of Tax Avoidance Purpose) – Doruss 사건을 중심으로

- 특정 법적 예외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 대해 사내유보금에 대한 세금을 다룬 IRC 제 532조는 사내유보를 허용한 것에 의한 주주에 과세하는 것을 회피할 목적이라는 것에서 기여를 하고 있음
- 비록 IRC 제 532조는 중대한 목적을 가진 개인이 누구인지 정의내리지 못하였으나, 곁보기에는 기업소유권과 같은 것의 공유를 통해 기업을 통제할 수 있는 자로 보임
- 또한 IRC 제 532조에서는 기업의 주관적인 의도를 강조함
- 그리고 탈세목적이 있을 때는 “그 목적이 달성되든 되지 않더라도 세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라고 쉽게 해석될 수 있음
- 기업의 의도가 무엇인가는 중요한 물음임
- 탈세의 목적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내 유보를 하지 않고 배당하였을 경우 주주가 부과하여야 하는 세금이 사내유보로 인하여 감소한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음
- 법정은 주주가 받은 배당에 대한 추가적인 과세는 탈세목적을 확인하기 위한 의도적 증거로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임
- 그러나 배당에 의해 세금의 법적 책임이 증가하였을 것이라는 단순한 사실은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필연적인 의미는 아님
- IRC 제 532조는 주주에 대하여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인 사내유보금에 대해 세금을 적용하는 것을 다루고 있음
- 기업이 탈세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을 규명하지 못한다면 과세하여야 한다는 판결도 있음
- 어떤 판결은 기업이 탈세가 사내유보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보일 수 없을 때 과세함
- 세금회피가 주요하거나 지배적인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단순히 보여

주기는 충분치 않음. 법원은 반대로 기업이 탈세의도가 완전히 없다는 것을 보이라고 요구하지 않았음

- 아직도 어떤 법원에서는 기업들에게 탈세가 사내유보를 위해 주요하거나 지배적인 동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를 요구함

□ Donruss 사건의 개요

- 이러한 논쟁은 Donruss 사건에서 정점을 이룸(회사에서 단 한명의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아 탈세하고 있다고 정부로부터 소송을 당함)
- Donruss는 이윤극대화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기업의 모든 주식은 단 한명의 주주에 의해 소유됨. 1955~1961년 동안 그 회사는 기업의 수익을 \$658000이상 증가시켰으나 어떠한 배당도 하지 않았음
- 자본과 재고를 위한 경비, 비용증가, 일반적인 경제의 위험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그 사내유보를 정당화하기 위해 제시됨
- 관할 법원에서 배심원들은 그 기업이 사업을 위한 합당한 필요에 의해 사내유보금을 축적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함
- 그러나 그 단일 주주의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은 확인하지 못함

□ Donruss 사건의 진행

- 정부로부터 받은 지시는 다음과 같음. 부적합한 사내유보금은 주주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만은 아님. 회사의 사내유보정책에 의한 것이었다면 충분한 것임(즉, 기업의 승리)
- 법원은 탈세가 사내유보의 목적이어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를 거절함
- 항소심에서는 “배심원들은 사내유보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사내유보의 이면에 탈세가 단일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평결을 내리면서 납세자를 지지함
- 그러나 이 법정은 정부의 제안된 지시를 거절하였고 사내유보에 대한

세금은 오직 탈세가 사내유보를 위한 지배적, 통제적이거나 재촉하는 동기였을 때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판결함

- 오직 탈세를 위한 사내유보금만이 과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판결
 - 이 이슈는 IRC 제 533조에 반영됨
 - 탈세가 부적합한 사내유보를 위한 한 가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규명해야 하거나 탈세가 지배적, 통제적이거나 재촉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임
 - ‘목적’이라는 것과 법령(법규, 규정)의 입법부 역사를 실험한 뒤에 그 법정은 그 기업이 반드시 우세한 증거로 증명해야한다고 결론내림 (주주에게 부과된 세금을 피하는 것은 사업상 적합하게 필요에 의한 것 이상의 사내유보의 하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주지할 것)
 - 요약하면, 정부는 기업의 사내유보가 탈세를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규명하여야 하고, 기업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규명하여야 한다는 판결임
- 판결 이후의 논쟁
 - 기업의 결정에 하나의 동기라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에 납세자는 최소한 사내유보에 대한 다른 동기를 보여주면 되는 것이었음
 - 사내유보를 결심하는데 탈세가 공헌하지 않는다는 사례 이후 사내유보금의 목적에 대한 검증은 여전히 관련되었고 법원은 그것을 유지. 법원은 ‘목적’이 비록 그것이 세금의 중요함(결과)에 대한 지식이라 하여도 그러한 지식은 사내유보금을 결정하기 위해서 공헌하지 않는다는 단순한 지식 그 이상을 의미한다고 봄(이후에도 법정은 위와 같은 판결을 계속 내림)
- 소수의 의견; 국회가 납세자에게 ‘최후의 분명한 가능성’을 주었다고 평가함

-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과도한 사내유보라도 그것은 회피의 목적 때문이 아니고 소수의견이 반영되는 한 납세자들은 그런 최후의 분명한 가능성을 부인하였을 것
- 비록 일단 부적합한 사내유보로 인한 탈세 추정으로 결론이 나면 세금의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회피의 양자로서 Donruss의 사건이 해결됨

IRC 531: "IMPOSITION OF ACCUMULATED EARNINGS TAX. In addition to other taxes ... there is hereby imposed ... an accumulated earnings tax equal to the sum of--(1) 27Y2 percent of the accumulated taxable income not in excess of \$100,000, plus (2) 38Yi percent of the accumulated taxable income in excess of \$100,000."

IRC 532: "CORPORATIONS SUBJECT TO ACCUMULATED EARNINGS TAX. (a) GENERAL RULE.-The accumulated earnings tax imposed by section 531 shall apply to every corporation (other than those described in subsection (b) [(1) section 542 personal holding companies, (2) section 552 foreign personal holding companies, and (3) subchapter F corporations]) formed or availed of for the purpose of avoiding the income tax with respect to its shareholders or the shareholders of any other corporation, by permitting earnings and profits to accumulate instead of being divided or distributed." Subchapter S corporations, IRC 1371-77, are also exempted, their shareholders being taxed even when earnings are accumulated for no tax avoidance purpose, IRC 1373. Note that the language of section 532(a) is broad enough to include the avoidance of tax for the benefit of corporate shareholders, but the Regulations, Treas. Reg. 1.532-1 (a)(1)(B), 1.532-1(a)(2) (1959), refer to the "individual income tax" (Emphasis added.) and neither the cases nor this Comment make any reference to the alternative interpretation.

- 미국 국세청(IRS)과 법원은 신고 후 1년 이내에는 배당의 진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AET 부과 결정을 내리지 않음(유병룡, 2007)
- 법인은 배당을 통해서 AET의 과세표준을 줄일 수도 있으므로, 명목상의 배당만을 실시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일단 국세청이나 법원이 AET에 대한 부과 결정을 내린 후에는 그 후에 배당을 하더라도 AET를 납부해야 함

□ The Bardahl Formula (AET에 대한 방어 수단)

- 수익에 대해서 충분한 수준까지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AET는 미국 국세청에 의해 부과되는 벌금과도 같은 역할을 함(One of the primary tools to defend against the AET. IRC Section 531, for being profitable and not paying a sufficient level of dividends)
- AET는 IRC(Internal Revenue Code) 제 53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가장 높은 개인 세율 39.6%을 곱하여 계산 됨. (AET is computed by multiplying the Accumulated Taxable Income (IRC Section 535) by the highest individual tax rate, 39.6%).)
- AET는 사내유보금액을 줄임으로써 과세 정도가 감소할 수 있음 (Accumulated Earnings Tax can be reduced by reducing Accumulated Taxable Income.)
- IRC 제 535(c)(1)조는 사업상 합당한 필요금액의 AET를 감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사업상 필요한 합리적인 금액의 정의(Determination of reasonable working capital)는 다음과 같음

- 사업상 필요한 금액 = 연간 판매비용(Annual cost of goods sold) + 연간 운영비용(Annual operating expenses) + 예상 연방 소득세 (Estimated federal income taxes) × 운영 주기 일 수(Number of days in the operating cycle)

□ The Bardahl Formula 계산 방법

- 1 단계; Inventory turnover(재고회전율)=(average inventory÷cost of

goods sold)×365 days

- 2 단계; Accounts receivable turnover(채권 계정 회전율)=(average accounts receivable÷sales)×365 days
- 3 단계; Number of days in operating cycle(운영 주기 일수) = inventory turnover+accounts receivable turnover
- 4 단계; Working capital needs(필요 자금 양)=operating cycle÷365 days × (cost of goods sold+annual net)

2) 적정유보초과소득세 과세대상법인¹¹⁾

- 규모에 관계없이, 주주의 배당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사내에 이익을 유보하고 있는 모든 법인이 AET 부과의 대상이 되며, 다음의 4가지 특수한 경우만이 제외됨
 - 개인지주회사(personal holding company)
 - 외국개인지주회사
 - IRC Sec. 501~504에 따른 면세법인
 - IRC Sec. 1297에 따른 소극적 해외투자법인
- 비공개법인 뿐만 아니라 공개법인 역시 AET의 과세대상이 됨
 - 공개법인 또한 소수의 주주에 의하여 지배될 수 있으므로, 비공개법인과 차별화할 이유가 없음
 -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경영진이 주주의 조세부담 경감을 위한 이익유보 정책이 가능한 비공개법인에게만 적용되고 있음

11) IRC Sec. 532

3) AET의 계산¹²⁾

- 초과된 이익의 축적분을 유보과세소득(accumulated taxable income)이라 하며, 이에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됨
 - 유보과세소득은 조정 소득(adjusted taxable income)에서 배당공제(dividends paid deduction)와 유보이익공제(accumulated earnings credit)를 차감하여 계산함
 - 조정소득은 과세소득에 가산조정항목을 더하고 차감조정항목을 차감하여 계산함
- 유보과세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음
 - 유보과세소득은 먼저 세소득에서 몇 가지 항목을 가감하여 과세소득을 산정한 다음, 여기에서 (지급)배당공제와 유보이익공제를 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법원은 과세유보소득은 당기의 과세소득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바, 당기 또는 문제되는 사업연도에서 소득이 늘어나지 않은 경우에도 유보이익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판시함¹³⁾
 - 과세유보소득은 이전의 모든 유보소득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과세연도 또는 조세회피 의도가 발견된 사업연도의 그것을 대상으로 한다.
 - 유보과세소득 = 조정소득(C) - 배당공제(A) - 유보이익공제(B)
 - (A) 배당공제 : 배당공제의 범위는 i) 과세연도 중 지급한 배당, ii) 소급 배당, iii) 가상배당, iv) 청산배분임
 - (B) 유보이익공제: 일반사업회사, 서비스회사, 자주 및 투자회사 각각에 대하여 다른 규정이 적용됨
 - i) 일반사업회사는 \$250,000에서 직전 과세연도말의 누적유보이익¹⁴⁾

12) 유병룡(2007)

13) 김원목, 유보이익세의 법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학위 논문

14) 직전 과세연도까지의 누적유보이익에서 당기 중 지급한 소급배당금액을 공제한 금액.

을 차감한 금액과 사업상 합리적인 필요에 의해 유보한 당기유보이
익¹⁵⁾ 중 큰 금액을 공제함

ii) 보건, 법률, 공학, 건축, 회계, 손해사정, 공연예술 및 자문 등에 종
사하는 서비스 회사의 법정 기본공제액은 \$150,000임

iii) 지주 및 투자회사는 \$250,000에서 직전 과세연도말의 누적유보이
익을 차감한 잔액만 공제되고 사업상 합리적인 필요액은 공제가 허
용되지 아니함

(C) 조정소득

조정소득 = 과세소득 + 가산조정항목ⓐ - 차감조정항목ⓑ

ⓐ 가산조정항목의 범위는 i) 배당소득공제, ii) 이월결손금공제, iii)
전년도 한도초과액으로서 이월공제된 기부금, iv) 소금공제 또는 이
월공제한 자본손실임

ⓑ 차감조정항목의 범위는 i) 연방소득공제와 국외 이윤에 과세된 조
세, ii) 10% 법인한도초과기부금, iii) 공제불능 자본손실, iv) 자본이
득에서 관련 소득세를 차감한 순 자본 이득

4) 사업상 필요한 합리적인 이익유보의 사례

□ 사내유보의 합당성 평가(Reasonableness of an Accumulation)

- 사내유보의 합당성 여부가 중요한 이슈가 되는 이유에 대해 다음 두
가지 근거를 들 수 있음
- IRC(Internal Revenue Code) 제 533조는 주주에 대한 세금 회피 목적
으로서 부당한 유보임을 긍정함을 추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Section 533 attaches a presumption of the existence of the purpose
of shareholder tax avoidance to an affirmative finding of an
unreasonable accumulation.)

15) 배당공제액과 순자본이득(관련 소득세 차감 후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

- IRC 제 535(c)(1) (A)조문은 사내유보에 있어서 합리성이 긍정되면 어떤 세금도 부과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Section 535(c)(1) (A) provides that no tax shall be levied upon any part of the accumulation affirmatively found to be reasonable.)

- IRS는 ‘사업상 합리적이 필요성(reasonable business needs)에 대해 일반적인 가이드라인만을 제공할 뿐, 세부 사항은 법원의 판례, 시행령, 관련 세법규정 등 다양한 요소를 통해 의미를 추론해야 함
- 법원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와 사업상 필요한 합리적 유보로 간주하는 두 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있음
 -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주주에 대한 대출
 - 주주의 개인적 편익을 위한 법인자금의 지출
 - 주주의 친인척 등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에 대한 대출
 - 관계 · 관련회사에 대한 대출
 - 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재산과 주식에의 투자
 - 실현성이 없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유보
 - 사업상 필요한 합리적인 유보라고 보는 경우¹⁶⁾
 - IRC Sec. 303에 의한 상속세 납부에 필요한 금액.
 - 유보이익의 사용에 관한 구체적이고 분명하며 실행 가능한 계획이 있는 경우
 -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사용될 계획이 있는 경우
 - 사업상 필요한 합리적인 유보인가의 결정은 과세연도 말의 사실 및 정황에 따름
 - 사업확장 또는 설비갱신, 주식 또는 투자의 취득에 의한 새로운 기업의

¹⁶⁾ IRC Sec. 537

취득, 부채상환, 운전자본, 고객 또는 공급처에 대한 대출, 제조물 피해 보상에 의한 손실 등도 사업상 필요한 합리적인 유보에 해당함

- 더불어 법원은 실제 또는 잠재적인 소송, 주요 고객의 적자에 이은 사업실적 저조, 특정손실에 대비한 자가 보험적 준비금, 파업 가능성에 대한 준비금 등 사업상 우발적 상황에 대비하여서도 이익을 유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2. 일본의 동족회사에 대한 초과유보금과세제도¹⁷⁾

1) 제도의 도입 및 개념

- 1950년 적립금과세가 채택된 것을 시초로 등장하였으며, 1961년에 유보금과세방식으로 변경되었음
 - 미일강화조약의 체결을 준비하기 위해 연합군최고사령관에 의해 구성된 Shoup사절단이 1949년부터 ‘일본세제보고서’ 등을 통해 일본의 과세제도 개혁에 영향을 미쳤음
 - 1950년, Shoup 사절단의 권고에 따라 유보소득의 누적액에 대해 매기의 소득세 자연이자에 상당하는 과세를 행하는 적립금 과세가 채택되었음
 - 본 과세방식이 1961년에 이르러, 유보금에 과세를 하는 방식으로 변경 되었음
- 특정동족회사가 일정한도액을 초과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 등의 금액을 유보한 경우 부과됨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외에 그 초과분에 대해 금액에 따라 10, 15, 20%의 특별 세율에 의한 법인세가 추가로 과세되는 제도

17) 유병룡(2011)을 정리.

임

- 이 때 동족회사란 다음의 세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지칭함(일본 법인세법 20조¹⁸⁾, 일본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i) $\frac{\text{회사의 주주 등의 3인 이하가 소유한 주식의 수(혹은 출자 금액)}}{\text{회사의 기발행주식(혹은 출자)의 총수(혹은 총액)}} > 50\% \quad 19)$

ii) $\frac{\text{회사의 주주 등의 3인 이하가 소유한 의결권}}{\text{의결권의 총수}} > 50\% \quad 20)$

iii) $\frac{\text{합명회사, 합자회사 혹은 합동회사의 주주 등의 3인 이하의 수}}{\text{합명회사, 합자회사 혹은 합동회사인 회사의 사원의 총수}} > 50\%$

- 더불어 상기된 동족회사의 판정에 있어, 개인 혹은 법인과의 사이에서 그 개인이나 법인의 의사와 동일한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에 동의한 자가 있는 경우, 그 자가 소유한 의결권은 해당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것으로 봄(일본 법인세법시행령 제139조 제7항)

2) 과세의 취지

- 상황적으로 불평등할 수밖에 없는 과세 조건으로 인해 개인사업자와 동족회사간의 세금 부담 차이가 발생하며, 이를 해소하고자 함
- 개인사업자의 경우 누진세율인 소득세가 자동적으로 과세됨

18) 第二十条 新法人税法第六十四条の四の規定は、施行日以後に同条第一項に規定する特定公益法人等である法人が普通法人に該当することとなる場合及び施行日以後に同条第二項に規定する適格合併が行われる場合について適用する。2 施行日から附則第一条第五号に定める日の前日までの間ににおける新法人税法第六十四条の四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条第一項中「一般社団法人若しくは一般財團法人又は医療法人」とあるのは、「医療法人」とする。

19) 여기에서 주주 등이란, 회사가 자기 주식(혹은 출자)을 소유한 경우의 회사를 제외한다. 또한 주주 등의 동족관계자도 문자에 포함되며, 이하 세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주주에 적용된다.

20) 여기에서 의결권이란 다음의 네가지를 말한다. ① 사업의 전부 혹은 중요한 부분의 양도, 분산, 계속, 합병, 분할, 주식교환, 주식이전 혹은 현물출자에 관한 결의에 관계되는 의결권, ② 임원선임 및 해임에 관한 결의에 관계되는 의결권, ③ 임원보수, 상여, 기타 직무집행의 대가로써, 회사가 공여하는 재산상의 이익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한 결의에 관한 의결권, ④ 잉여금 배당 혹은 이익배당에 관한 의결에 관계되는 의결권.

더불어 의결권의 총수에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주가 소유한 의결권은 제외한다.

- 이에 반해 동족회사는 누진세율에 의한 소득세 부담이 법인세 부담을 상회하게 될 경우, 소득을 배당이나 사내 유보 등의 방법을 통해 세금 부담을 의도적으로 회피할 수도 있음
- 이에 개인사업자와 동족회사 간에는 세금 부담의 차이가 생길 가능성 이 커지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본 제도가 도입됨

□ 이러한 논리는 동족회사와 비동족회사의 비교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음

- 비동족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적절한 배당이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동족회사는 경영진이 곧 주주이므로, 경영진의 소득세 부담이 커지게 되는 배당보다는 세부담이 적은 사내유보를 선택하게 됨
- 따라서 동족회사와 비동족회사 간에도 세금 부담 차이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러한 불합리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제도가 요구됨

□ 상기된 이유로 발생하는 동족회사의 사내 유보를 방지하게 될 경우, 기타 기업과의 과세 균형을 저해하게 되는 동시에 회사의 이익분배를 지연시켜 사회 전체의 후생이 증진하는데 역시 기여하지 못하므로, 본 제도를 도입함

3) 특별과세액의 산정방식

ㄱ. 유보금액의 계산

□ 본 제도의 특별세율의 기초가 되는 초과된 유보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유보소득금액에서 법인세 등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임.(일본 법인세법 제67조 제3항)

□ 이러한 유보금액을 산출하는 식은 다음과 같음

- i) 소득 등의 금액(A) - 손금에 산입할 금액(B) = 유보소득금액(C)
 - ii) 유보소득금액(C) - 법인세 등의 금액(D) = 유보금액(E)
 - 더불어 위의 식 i)과 ii)에 사용되는 금액의 세부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음
- (A) 소득 등의 금액 :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다음 <표>에 제시된 ①~⑥까지의 금액을 가산하고, ⑦을 공제한 금액임
- 여기에서 소득금액이란 비적격합병 또는 비적격분할형분할에 관계 되는 마지막 사업연도 혹은 분할 전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 그 합병 등에 따른 양도이익액이나 양도손실액을 익금액이나 손금 액에 산입하지 않고 계산했을 경우의 소득금액을 의미함

<표 III-1> 유보금액 구성요소 중 소득 등의 금액

항 목	근거 법령
① 받을 배당 등의 익금불산입액	법인세법 제23조
② 환급소득세액 등 및 결손금 이월에 따른 환급금액	법인세법 제26조
③ 이월결손금 손금산입규정에 의한 당기공제액	법인세법 제57~59조
④ 수용환지, 특정토지구획정리사업, 특정주택 지조성사업, 농지보유합리화를 위한 농지 등을 각각 양도한 경우의 특별공제액	조세특별조치법 제65조의 2 제9항 동법 제65조의 3 제7항 동법 제65조의 5 제3항
⑤ ·신 광상탐광비 혹은 해외 신 광상탐광비 의 특별공제액 ·시모노세키의 인정법인 소득의 특별공제액 ·농업생산법인의 육용우매각에 관계되는 소득의 특례	조세특별조치법 제59조 제4항 조세특별조치법 제60조 제4항 조세조약실시특례법 제7조 제2항
⑥ 특정외국자회사 등에 관계되는 과세 후 유보금액의 손금산입액	조세특별조치법 제66조의 8 제7항
⑦ 특정외국자회사 등에 관계되는 과세대상 유보금액의 익금산입액	조세특별조치법 제66조의 6

- (B) 손금에 산입할 금액 : 다음 두 가지를 합계한 금액임
- 이익처분에 따른 사외유출액
 - 손금처리 비용 등에서 사외유출한 것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
(기부금, 접대비 및 임원상여, 연체세, 가산세 등의 손금불산입액)

- (C) 법인세 등의 금액 : 다음 두 가지를 합계한 금액임
- 당기 법인세액 (각종 세액공제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함)
 - 법인세할 주민세액으로 계산한 금액 (주민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소득과세액동제전의 법인세액의 20.7% 상당액) (일본 법인세법 시행령 제139조의 10)

ㄴ. 유보공제액의 계산

- 본 제도의 특별세율의 과세기준이 되는 과세유보금액은 유보금액에서 유보공제액을 공제한 잔액임.(일본 법인세법 제67조 제1항)
 - 여기에서 유보공제액은 기초공제액을 뜻하며, 소득기준액, 정액기준액, 적립금기준액, 자기자본기준액(중소 특정 동족회사에 한함) 중 가장 큰 금액이 됨.(일본 법인세법 제67조 제5항)
- 유보공제액을 산출하는 공식 및 기준액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유보금액 - 유보공제액 = 과세유보금액
 - 기준액 내용은 다음의 <표III-2>로 제시함

<표 III-2> 유보공제액의 기준액 내용

항목 및 내용	근거 법령
① 소득기준액 소득 등의 금액 × 40%	법인세법 제67조 제5항 제1호
② 정액기준액 2,000만엔 × 사연연도월수/12	법인세법 제67조 제5항 제2호
③ 적립금기준액 (기말자본금액 × 25%) – 기말 이익적립 금액	법인세법 제67조 제5항 제4호
④ 자기자본기준액 ·사업연도 종료시 자본금(혹은 출자금액)이 1억엔 이하인 특정동족회사(중소특정동족 회사)에만 적용. ·자본금 1억엔 이하 여부 계산식 (전기말 총자산액-전기말 자기자본액)× 3/7 – 전기말 자기자본액	법인세법 제67조 제5항 제4호

ㄷ. 동족회사의 특별세율

- 적정유보소득을 초과하는 유보금액에 다음 기준에 따라 특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함
 - 연 3천만엔 이하의 금액의 경우 100분의 10
 - 연 3천만엔을 초과 연 1억엔 이하의 금액의 경우 100분의 15
 - 연 1억엔을 넘는 금액 100분의 20

4) 기타사항

- 일본의 동족회사에 대한 초과유보금 과세제도는 우리나라의 적정유보초

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제도와 기본적으로 같은 구조를 지니고 있음

- 법정한도 초과유보소득에 대해서만 10~20%의 특별세율이 적용되어 추가적으로 부과되고 징수하는 제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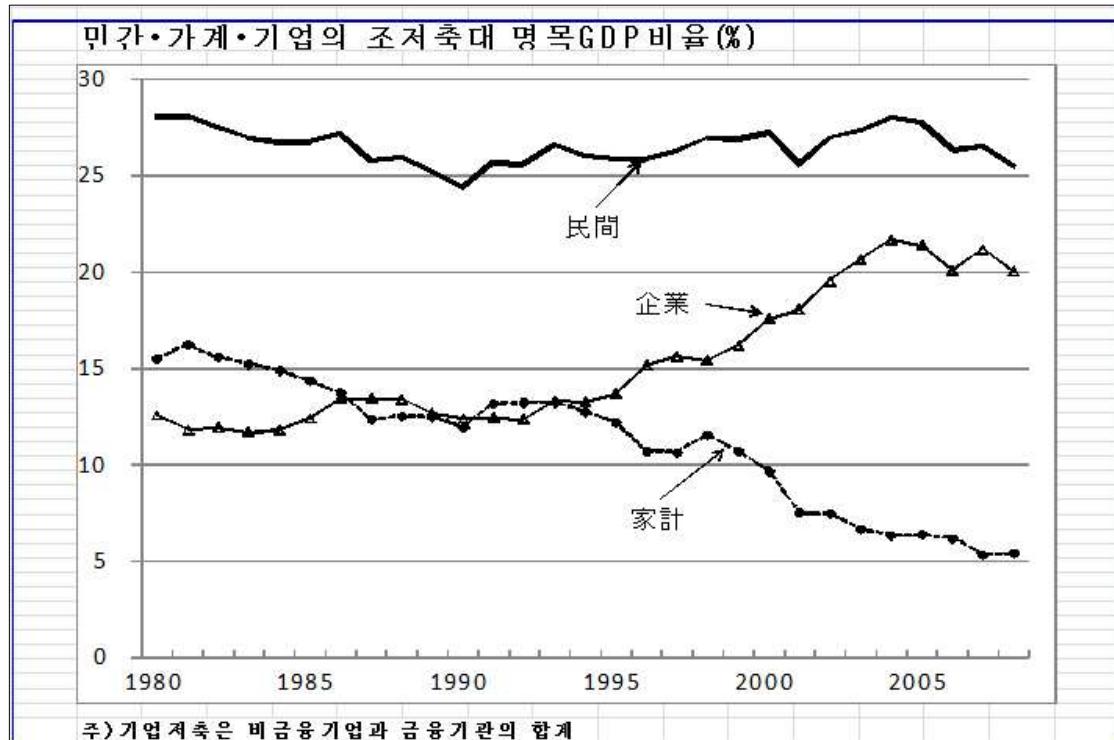
□ 일본의 변호사연합회 및 일본세무사연합회는 2005년도 세법개정건의서에서 동족회사에 대한 초과유보금 과세제도의 폐지를 건의하고 있음

- 손금산입한 이월결소금 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현행의 과세는 이론적 근거가 빈약하며, 과세에 따른 폐해도 크기 때문임

□ 최근 일본의 현황

- 투자의욕을 감퇴로 일본기업은 과잉 저축 문제를 앓고 있음
- 거품경제 붕괴 이후, 일본기업들은 투자 대신 사내유보비율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음
- 일본기업의 재무전략은 거품경제 붕괴 이후, 외부 차입에 의존한 재무 전략에서, 부채를 청산하고 안정된 경영시스템 구축하는데 노력해 왔음
- 보유자금을 투자로 전환시켜야 하는데 거품경제 붕괴가 일본기업의 투자활동을 억제하고 있음

<그림 III-1> 일본 민간, 가계, 기업의 저축 현황



주: 기업의 저축은 사내유보정도를 나타냄

□ 과잉저축과 일본기업의 성장속도

- 기업이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설비 또는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하는데, 일본기업은 부채 상환, 불확실성을 대비하여 사내 유보를 확대해 왔음
- 설비투자와 현금흐름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으며, 저축이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비투자의 증가율은 현금증가율에 미치고 못하고 있음

3. 대만의 유보된 이익금에 대한 과세제도

□ 납입자본금 금액의 한도를 벗어나 이익을 유보할 경우, 초과한 이익금에 대해 1회에 한해 10%의 추가 법인세를 납부함

- 정부가 지정한 중요산업의 경우 한도가 불입자본금의 2배로 늘어나게 되므로, 불입자본금이 많은 경우 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발생하지 않음

- 이에 따라 대만은 오히려 증자를 통해 과세를 회피할 수 있음

- 회사가 미배당이익으로 생산설비를 확충한 경우나, 주식을 발행하여 주식 배당을 받은 경우에도 배당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 주식을 양도하거나 증여, 상속을 한 경우에는 과세신고를 해야함.
 - 미배당이익으로 생산설비를 확충하여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의 예는 다음과 같음
 - 생산, 업무제공, 연구개발, 품질검사, 공해방지, 에너지 절약이나 공업 안전위생 기준에 따라 기계설비나 운수설비를 증설, 개선하는 경우
 - 전항의 기계설비나 운수설비를 증설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자금을 신규로 차입하거나 기존차입금을 반제하는 경우
 - 대만 법인세법 제8조에 규정하는 중요산업에 재투자하는 경우

4. 각국의 유보소득과세제도 비교

<표 III-3> 각국의 유보소득과제 제도

항 목	미 국	일 본	대 만	한 국 (2001년 폐지 전)
과세대상 법인	· 적정유보초과소득세: PHC, 면세법인, 소회사를 제외한 모든 법인	주주 등 3인 이하가 아래일 경우. · 총 발행주식수의 50% 이상을 소유 · 의결권의 50% 이상을 소유 · 합명, 합자, 합동회사 사원총수의 50%를 초과	납입 자본금의 한도를 초과하여 미배당이익금을 유보하고 있는 법인(초과한 이익금에 대해 1회에 한해 부과)	자기자본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비상장법인과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과세유보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적정유보초과소득 = 조정소득 - 배당공제(과세연도 중 지급한배당) - 유보이익공제(법인성격에 따라 다른 규정)	과세유보금 = =소득 등의 금액 - 이익처분액 등 - 당기법인세 등 - 유보공제액 (추가 법인세)	이익 유보금액 - 납입자본금 (중요산업은 2배) - 생산설비확충자금 (1회 한정 추가세)	적정유보초과소득 = 유보소득 - 적정유보소득 (일반법인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추가세)
세율	15%	· 3천만엔이하: 10% · 3천만엔~1억엔: 15% · 1억엔 초과: 20%	10%	15%

IV. 법인의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

1. 법인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의 의의

- 해외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법인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개인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제도임
 - 기업이 배당을 줄이고 사내유보를 하게 되면 개인소득세를 이연시키기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므로, 사내유보는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
 - 이때 과소배당이 일어나게 됨
 -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이와 같은 사내유보를 통한 개인소득세 회피는 소유주가 다수인 공공기업(public firm)이 아니라 소유가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는 기업(private firm)에 나타날 가능성이 큼
 - 왜냐하면, 소유주가 많은 기업의 경우 배당을 함으로써 대리인 비용(agency cost)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과소 배당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임
 - 반면, 소수에게 소유가 집중된 기업의 경우에는 배당을 통한 대리인 비용의 절감보다는 사내유보를 통한 과세이연으로 인한 이득이 커지게 되므로 배당을 줄이고 사내유보를 하게 됨
-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과거에 이와 같은 목적으로 과다사내유보에 대한 과세제도가 도입된 적이 있음
 - 1990년 12월에 신설되었던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제도는 2001년에 폐지되었음
 - 대한민국에 도입되었던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제도가 비교적 단기간에 걸쳐 유지되었던 이유는 실효성이 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

측됨21)

-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개인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를 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듦

2. 법인의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의 효과

- 법인의 사내 유보금에 대해 과세제도가 개인소득세 회피를 방지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과는 별도로 법인의 행동에 여러 가지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해 검토하여 보고자 함
 - 법인의 사내유보와 재무구조
 - 배당과 자본조달 방법
 - 법인의 투자행위

1) 사내유보와 재무구조(부채)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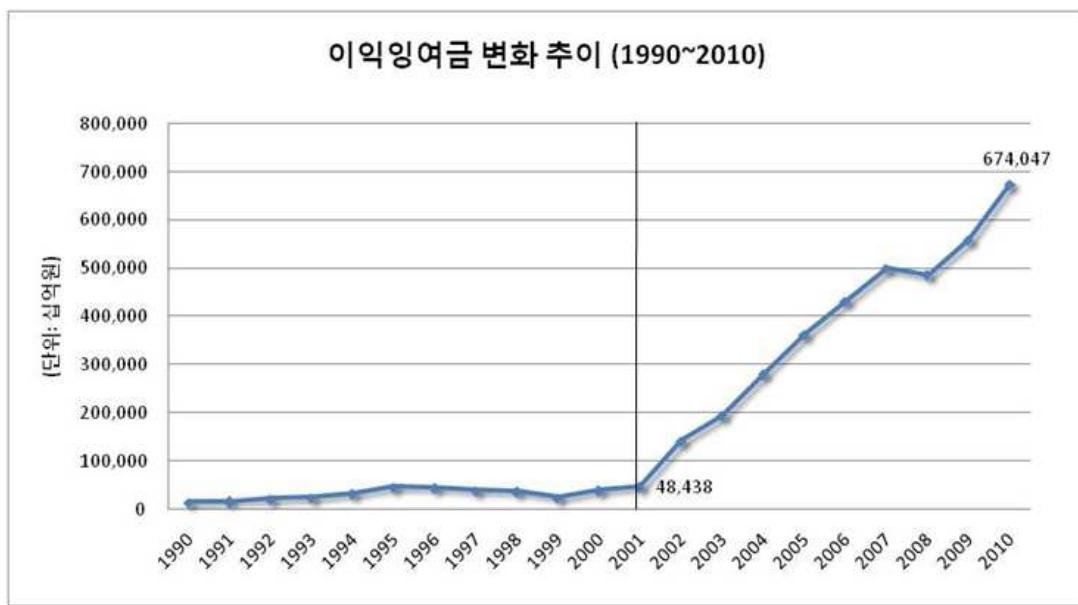
- 법인의 사내유보에 대해 조세가 부과될 경우, 사내유보를 하려는 동기에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됨
 - 법인에 순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배당, 임직원의 임금상승 또는 사내유보 등으로 배분됨
 - 사내유보금에 대하여 조세가 부과되면,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법인의 사내유보 동기는 감소하게 됨
 - 사내유보금에 대한 조세는 사내유보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초래

21) 종전에는 비상장대법인이 이익잉여금을 배당하지 아니하고 적정수준을 초과하여 사내유보하는 경우 그 초과 유보분에 대하여 15%의 세율로 과세하였으나, 이는 기업이익의 사내 유보를 통한 자기자본 확충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이를 폐지함(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현행 법 56 삭제, 국회 속기록)

하기 때문임

- 법인의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는 사내유보 동기를 저하시킴으로써 사내유보액을 감소시킬 것임
 -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로 사내유보를 하려는 동기가 낮아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법인의 사내유보액은 줄어들 것임
- 아래 그림은 대한민국의 이익잉여금(사내유보)의 연도별 추이를 보여주고 있음
 - 적정 사내유보 초과에 대한 과세가 폐지되었던 시점인 2001년을 기점으로 이익잉여금이 크게 확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것은 곧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가 사내유보금을 감소시킨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²²⁾

<그림 IV-1> 기업 내 이익잉여금 변화 추이 (전 산업, 1990~2010)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22)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의 폐지가 사내유보금 증가로 이어졌으므로,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사내유보금을 감소시킨다는 것임. 과세제도의 폐지와 과세제도의 존속이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것은 아니나, 영향력의 크기는 달라질 지라도 방향성만 맞다면 이러한 논리는 타당성을 가짐

- 아래 표는 이익잉여금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방정식을 추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 시간추이를 통제한 결과, 사내유보과세 가변수가 음의 값을 가지며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음²³⁾
- 따라서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가 없어지면서 기업의 사내유보는 증가하였다고 결론 지을 수 있음
- 이와 같은 결과는 앞의 그림에서 도출한 결론과 일치함

<표 IV-1> 회귀분석 결과표 (종속변수: 이익잉여금)

독립변수	모형1
시간	2.02E7 *** (6.64E6)
사내유보과세 가변수	-1.58E8 * (8.13E7)
상수	6.11E7 (1.17E8)
N	21
R ²	0.830
Adjusted R ²	0.8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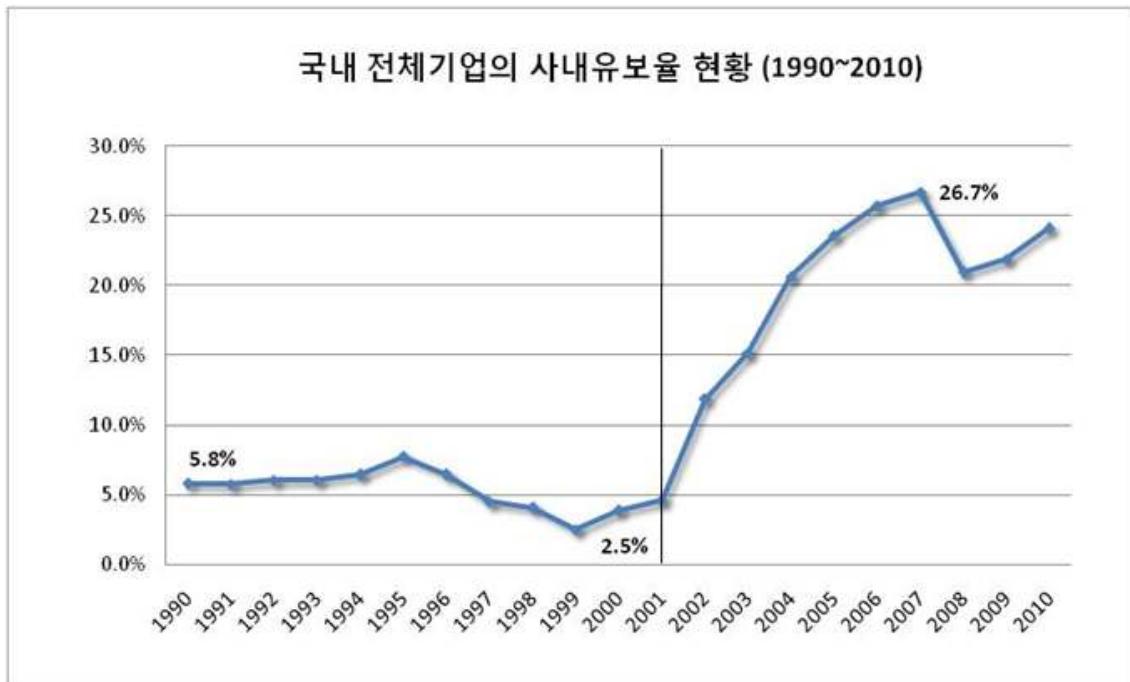
***, **, * : 1%, 5%, 10%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 아래 그림은 국내 기업의 유보율 추이를 나타내고 있음

- 이 역시 적정 사내유보 초과에 대한 과세가 폐지되었던 시점인 2001년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따라서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가 사내유보를 감소시킨다는 앞의 논리는 지지되는 것으로 보임

23) 사내유보과세 가변수는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가 행해졌던 2001년까지 1, 그 이후로는 0의 값을 가짐

<그림 IV-2> 국내 전체기업의 사내유보율 현황 (1990~2010)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 기준의 연구도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음
 - 유병룡(2007)에 따르면,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제도의 폐지는 기업의 유보소득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음
-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법인의 사내유보액을 감소시키게 되면 기업의 재무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
- 특히, 사내유보액의 감소로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아져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짐
 -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 표현됨

$$\text{부채비율} = \frac{\text{총부채}}{\text{총자본}} \times 100$$

- 위의 식에서 총자본에는 이익잉여금이 포함되므로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로 이익잉여금이 감소하게 되면 부채비율은 증가하게 됨
- 따라서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효과를 초래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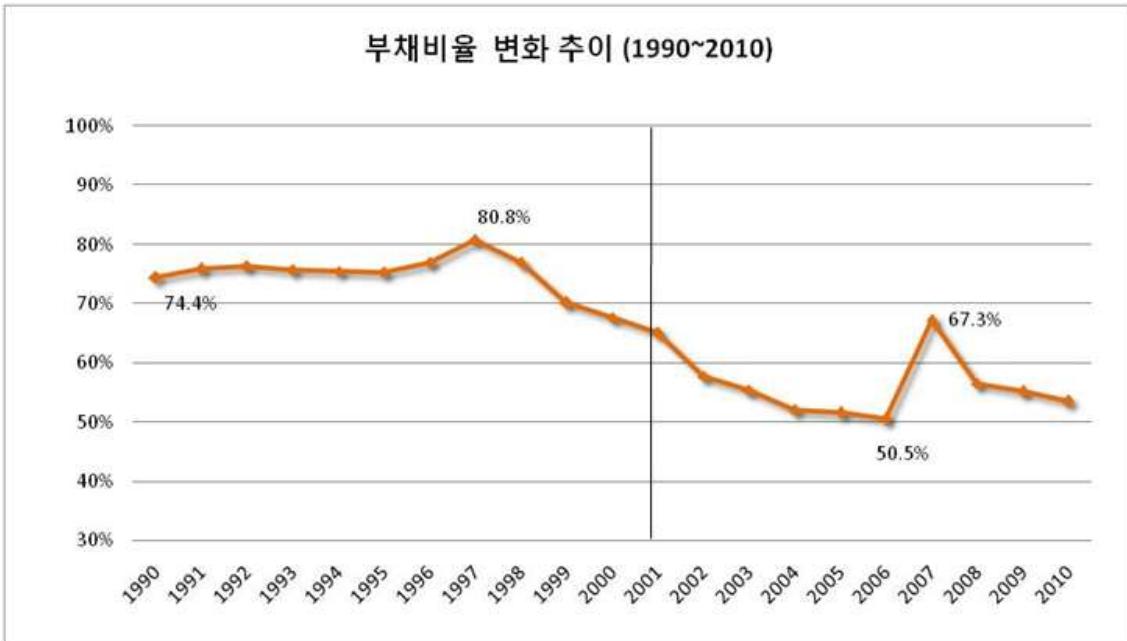
□ 기존의 연구에서도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가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킨다는 주장이 있음

- 권봉상 외(1999)에 따르면 전기의 사내유보과세가 현재기의 부채를 증가시키게 된다고 함

□ 아래 그림은 대한민국 기업의 부채비율 추이를 보여주고 있음

-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기업의 부채비율은 1997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2007년 다시 높아졌던 부채비율은 다시 낮아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이와 같은 경향은 IMF 구제금융 이후 기업들의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요구에 부응한 결과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가 존재하였던 시기(2001년 이전)에 비하여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2002년 이후)의 부채비율이 낮은 것이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제도의 폐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구제금융 이후의 부채비율 저감에 대한 요구의 효과인지 분리하기 힘든 측면이 있음
- 그러나 2002년 이후 부채비율이 더욱 현저히 낮아지는 것을 볼 때,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가 부채를 증가시킨다는 주장은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됨

<그림 IV-3> 기업 내 부채비율 변화 추이 (전 산업, 1990~2010)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 아래 표는 부채비율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방정식을 추정한 결과를 요약하고 있음
 - 표에서 보듯이, 시간추이를 통제한 상태에서 사내유보과세 가변수는 양의 계수를 가지며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함²⁴⁾
 - 따라서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가 존재하게 되면 부채비율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됨
 -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살펴본 그림을 통한 결론과 부합함

24) 사내유보과세 가변수는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가 행해졌던 2001년까지 1, 그 이후로는 0의 값을 가짐

<표 IV-2> 회귀분석 결과표 (종속변수: 부채비율)

독립변수	모형1
시간	-4.00E-3 (3.0E-3)
사내유보과세 가변수	1.41E-1 ** (3.9E-1)
상수	6.31E-1 *** (5.7E-1)
N	21
R ²	0.831
Adjusted R ²	0.812

***, **, * : 1%, 5%, 10%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2) 배당 및 자본조달 행위에 미치는 영향

- 법인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사내유보를 통한 개인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 미국, 일본, 과거 대한민국의 제도도 이러한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임
- 기업이 배당을 줄이고 사내유보를 하게 되면 개인소득세를 이연시키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므로, 사내유보가 이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될 때 과소배당이 일어나게 됨
 - 따라서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제도가 도입되면 사내유보의 감소와 함께 배당이 증가하게 됨

- 기존의 연구도 이와 같은 주장을 지지하고 있음
 - 미국의 적정유보초과세에 대해 분석한 Rao and White(1994)에 따르면,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로 인하여 배당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국내에서 과거에 도입되어 시행되었던 적정유보초과세에 대한 연구로는 유병룡(2007)이 있으며, 이 역시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배당을 증가시킨다고 결론짓고 있음
- 한편,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자본조달 방법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음
- 사내유보금에 대해 조세가 부과되면 사내유보를 통하여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것에 비해 외부자금을 동원하려는 유인이 강해짐
 -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사내유보를 통한 내부자금(internal fund)의 비용이 채권과 같은 외부자금(external financing)의 비용에 비해 커지게 됨
 - 따라서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는 기업으로 하여금 내부자금보다는 외부 자금을 선호하도록 하는 효과를 초래함
- 다음 그림은 회사채와 이익잉여금의 연도별 변화추이를 보여 주고 있음
 - 그림에서 보듯이 2002년부터 이익잉여금은 확연히 증가하는 반면, 회사채 발행은 감소하였다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따라서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는 사내유보를 통한 내부자금보다는 회사채와 같은 외부자금 방식의 자금조달을 선호한다는 위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음²⁵⁾

25) 이 경우에도 IMF 구제금융을 받으며 요구받았던 기업채무 저감의 효과를 분리하기는 힘든 측면이 있음. 보다 염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기업별 자료를 사용하여 회귀방정식을 추정할 필요가 있음.

<그림 IV-4> 회사채 및 이익잉여금 변화 추이 (전 산업, 1990~2010)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 다음 표는 회사채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방정식을 추정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음
 - 모형 1에 의하면, 사내유보과세 가변수는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 따라서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는 회사채에 대한 선호를 크게 한다고 볼 수 있음
 - 한편, 모형 2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회사채가 증가하는 추세가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가 있을 때가 없을 때에 비하여 더 커진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음
 - 이와 같은 결론은 앞의 그림을 통한 고찰과 일치함

<표 IV-3> 회귀분석 결과표 (종속변수: 회사채)

	모형1	모형2
시간	9.16E6 *** (9.54E5)	6.80E6 *** (5.34E5)
사내유보과세 가변수	4.53E7*** (1.17E7)	
시간 × 사내유보과세 가변수		3.02E6 *** (7.81E5)
상수	-4.12E7 ** (1.69E7)	-5.54E5 (8.07E6)
N	21	21
R ²	0.901	0.901
Adjusted R ²	0.890	0.890

***, **, * : 1%, 5%, 10%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3) 기업의 투자행위에 미치는 영향

- 여기에서는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기업의 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장기와 단기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함
 - 장기효과를 고찰하기 위하여 사내유보금에 조세가 부과될 때 새로운 균형점에서 어떠한 결과가 생기는지를 분석하고자 함
 - 한편, 단기효과 부분에서는 새로운 균형점이 생기기 전에 단기적으로 기업의 투자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분석함

가. 장기효과(균형분석)

① 회사의 투자행위에 관한 이론

- 법인이 내부적으로 유보하는 자산에 대해 과세를 할 경우 투자에 어떠한 효과가 발생할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인의 투자행위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 회사의 투자행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론이 존재하나 다음의 네 가지가 대표적임
 - Accelerator Model
 - 신고전 모형(Neoclassical Model)
 - 현금흐름 모형(Cash Flow Model)
 - 불확실성 모형(Uncertainty Model)
- Accelerator Model
 - 이 모형에서는 자본과 생산물의 비율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함
 - 이와 같은 가정을 받아들이게 되면, 투자는 생산물에 대한 수요에 따라 결정됨
 - 따라서 감가상각에 대한 법인세 공제나 투자세액 공제와 같은 요소들은 투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
- 신고전 모형(Neoclassical Model)
 - 위의 모형과는 달리 신고전 모형에서는 자본과 생산물의 비율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가정함
 - Jorgenson(1963)의 신고전모형에 따르면 투자량은 자본의 사용자 비용(user cost of capital)에 의해 결정됨

- 자본의 사용자 비용(C)이란 자산을 소유하는데 따른 비용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표현됨²⁶⁾
- 여기에서 r 은 시장이자율, δ 는 감가상각률, Ψ 는 감가상각에 대한 공제, k 는 투자세액 공제, Θ 는 법인세율, t 는 배당에 대한 개인소득세율을 의미함)

$$C = \frac{(r + \delta) \times (1 - \Psi - k)}{(1 - \Theta) \times (1 - t)}$$

- 신고전 모형에서는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높아질수록 투자는 줄어들고, 반대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것으로 주장함
- 즉 감가상각률, 법인세율, 배당에 대한 개인소득세율 등이 높아지면 자본사용자 비용이 높아져 투자는 줄어듦
- 한편, 감가상각에 대한 공제와 투자세액 공제가 커지면 자본사용자 비용이 감소하여 투자는 증가함

□ 현금흐름 모형(Cash Flow Model)

- 현금흐름 모형에 따르면, 기업이 보유한 현금의 양이 커질수록 자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게 됨
- 신고정 모형에서는 외부에서 차입하는 자금이나 사내에 유보된 현금이나 똑같은 기회비용을 가지고 회사가 원하는 만큼 아무런 제약 없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고 가정함
- 그러나 현금흐름 모형은 이러한 가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
- 이 중에서도 외부 차입금(external fund)과 회사가 보유한 현금(internal fund)가 같은 기회비용을 가진다고 보는 것을 부정함
- 현금흐름 모형은 투자 수익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외부자금(external fund)이 기업이 보유한 현금(internal fund)에 비해 높은 비용

26) 기업의 순이익은 법인세를 제외하고 모두 개인에게 배당된다고 가정함

을 가지게 된다고 봄

- 따라서 현금을 많이 보유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자본투자가 커지게 됨
- 현금보유량과 투자에 대한 이와 같은 견해를 지지하는 연구는 다수 존재함: Kadapakkam et al.(1998), Goergen and Renneboog(2001), Stein(2003), Moyen(2004), Degryse and De Jong(2006), Aggarwal and Zong(2006), Dleary et al.(2007), George et. al(2011) 등²⁷⁾²⁸⁾

□ 불확실성 모형(Uncertainty Model)

- 불확실성 모형은 기업의 투자행위가 여러 가지 종류의 불확실성에 의해 좌우된다고 가정함
- Goldberg(1993), Ghosal and Loungani(1996), Darby et al.(1999), Serven(2003)은 환율의 불확실성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음
- Driver and Moreton(1991)은 생산물 성장에서의 불확실성이 기업의 투자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음
- Guiso and Parigi(1999), Calcagnini and Saltari(2000), Bloom et al.(2007) 등에 따르면, 수요의 불확실성이 투자에 악영향을 미침
- Huizinga(1993)는 임금과 원재료 가격의 불확실성이 투자에 음의 효과를 끼친다고 보았음
- Ferrderer(1993)은 채권가격의 불확실성에 주목함
- Edmiston(2004)은 조세의 불확실성이 투자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함
- Minton and Schrand(1999)은 현금흐름의 변동성이 자본에 대한 투자를 저해한다고 하였음

27) 몇몇 연구는 이에 대해 반대되는 분석결과도 내놓고 있음: Kaplan and Zingales(1997, 2000), Cleary(1999) 등

28) 최근의 연구들은 이러한 혼합된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음: Moyen(2004), Cleary et al.(2007), Tsoukalas(2011)

- Beaudry et al.(2001)은 거시경제 변수의 불확실성 그 중에서도 인플레이션의 변동성이 투자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음

② 법인의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와 회사의 투자행동 변화

□ 법인의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가 초래하는 투자행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기업의 투자행위에 관한 이론을 바탕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음

- 여기에서는 각 모형을 바탕으로 법인의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함

□ Accelerator Model

- 이 모형은 자본과 생산물의 비율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므로, 투자는 생산물에 대한 수요에 따라 결정됨
- 기업의 투자행위가 이 모형과 같다면, 사내유보에 대해 조세가 부과 되더라도 투자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함
- Accelerator 모형에 따르면 기업의 투자는 생산물에 대한 수요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되는데, 사내유보에 대한 조세는 생산물의 수요를 변화시키지 않으므로 기업의 투자행위는 달라지지 않게 됨

□ 신고전 모형(Neoclassical Model)

사내유보가 없는 경우

- 신고전 모형에서는 자본의 사용자 비용(user cost of capital)이 높아질 수록 투자는 줄어들고, 반대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기업의 투자행위가 신고전 모형과 같은 행태를 따르고 기업의 순이익

이 개인에게 모두 배당된다면,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는 자본에 대한 투자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를

-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는 자본의 사용자 비용(user cost of capital)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임
- 자본의 사용자 비용은 감가상각률, 법인세율, 배당에 대한 개인소득세율 등이 높아지면 증가하고, 감가상각에 대한 공제와 투자세액 공제가 커지면 감소하게 됨

사내유보가 외생적으로 정해진 경우

- 그러나 기업의 이익이 모두 배당되지 않고 사내유보를 하게 되는 경우는 다른 결과가 초래됨
- 먼저 사내 유보액이 외생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면, 사내 유보액에 대한 과세는 배당금에 대한 개인소득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므로 다른 조건이 같다면 사내 유보액에 대한 과세가 없을 경우에 비하여 자본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게 됨
- 따라서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는 투자의 감소로 이어짐

사내유보가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경우

- 기업이 순이익을 배당하거나 사내유보를 내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 배당에 대한 과세와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에 따라 배당과 사내 유보액 그리고 투자가 동시에 결정됨
- 먼저 사내 유보액에 대한 과세가 없을 경우, 배당과 사내유보에 대한 다른 영향 요인이 없다면 배당을 하지 않고 모두 사내유보를 하게 됨
- 이러한 경우 사내 유보액에 대해 과세하게 되면 배당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초과하지 않는 한 배당을 하지 않고 모두 사내유보를 하게 됨

-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가 자본의 사용자 비용을 증가시키게 되어 투자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됨
- 한편,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가 배당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초과하게 되면 사내유보를 하지 않고 모두 배당을 하게 됨
- 이 경우에도 개인소득세가 자본의 사용자 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게 되므로 투자의 감소를 가져 옴
- 이상의 경우와 달리, 배당과 사내유보의 기업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과세 이외에 다른 요인이 존재하게 된다면 위에서 살펴본 경우 즉 사내유보액이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것과 유사한 결과가 초래됨

□ 현금흐름 모형(Cash Flow Model)

- 현금흐름 모형에서는 기업이 보유한 현금의 양이 커질수록 자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게 됨²⁹⁾
- 이와 같은 모형을 따르게 되면, 사내유보에 대한 조세의 도입은 기업의 자본투자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됨
- 기업의 투자액이 현금의 양에 의존하게 되는데,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로 인하여 현금의 양이 감소하게 되면 투자는 감소하게 됨

□ 불확실성 모형(Uncertainty Model)

- 불확실성 모형에 따르면, 기업의 투자행위는 기업이 직면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불확실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됨
- 이러한 불확실성 중 환율, 생산물 성장, 수요, 임금과 원재료 가격, 채권가격, 인플레이션 등에서의 불확실성은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가 이러한 변수들을 변화시켜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힘듦
- 한편 Edmiston(2004)은 조세의 불확실성이 투자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29) 현금의 양과 투자를 동시에 내생적으로 결정하는 모형에서는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즉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수익률이 크지 않은 곳에 투자할 가능성도 있음

보았는데,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조세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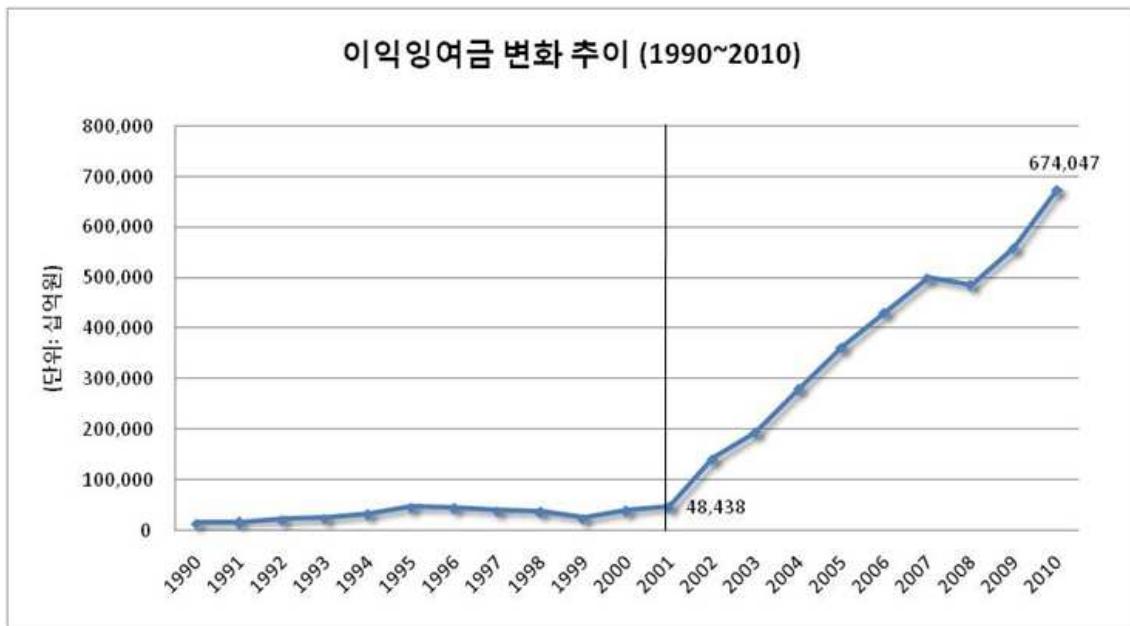
- o 조세제도는 변화하기 마련이고, 새로운 과세 항목의 추가는 향후 변화 가능성을 필연적으로 내포하게 됨
- o 따라서 사내유보금에 대한 추가적인 조세는 조세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게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또한, Minton and Schrand(1999)은 현금흐름의 변동성이 자본에 대한 투자를 감소시킨다고 주장하였는데,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는 현금흐름의 변동성을 줄이게 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음
- o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일정률을 곱하게 될 것 이므로, 자동안정화 장치(automatic stabilizer)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음
- o 사내유보금이 커질 때는 세액이 커지고 반대의 경우에는 세액이 줄어들게 됨
- o 따라서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는 현금흐름의 변동성을 감소시켜 투자의 증가를 가져 올 수 있음

나. 단기효과(불균형 분석)

- 위에서는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도입될 때 새로운 균형점에서 기업의 투자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았음
 - 종합하자면, 장기에서는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기업의 투자를 감소시킬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다른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음
 - 다음 그림은 대한민국 기업의 유보이익 추이를 나타내고 있음
 -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폐지된 2001년을

기점으로 사내유보금의 규모는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여 왔음

<그림 IV-5> 기업 내 이익잉여금 변화 추이 (전 산업, 1990~2010)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 사내유보금이 매우 큰 상태에서 사내유보금에 대해 조세가 부과되면 법인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내유보금을 줄이려는 방향으로 행동을 하게 됨
 - 단기에서는 사내유보금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과세를 피하려면 사내유보금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음³⁰⁾
- 사내유보금을 줄이는 방법은 다음의 한 가지 임
 - 배당확대
 - 임금상승
 - 투자확대

30) 물론 조세를 모두 부담하고서도 사내유보로 인한 이득이 더 크다면 사내유보액에는 변화가 발생하지 않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법인이 이렇게 행동하리라고 예측하는 것은 무리임.

- 사내유보금에 대한 조세의 도입으로 이와 같은 세 가지 방법 중 어떤 것 이 채택될 것인지는 각 기업의 특성과 경제상황 등에 의해 결정될 것임
- 만약 모든 기업이 사내유보금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배당확대나 임금상승을 채택하게 된다면 투자에는 변화가 없게 됨
-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극히 예외적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단기적으로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 경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변칙적인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것임
 - 예를 들면, 투자 수익이 낮은 곳이나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다. 실증분석

- 앞에서는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가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장기와 단기로 나누어 이론적으로 살펴보았음
- 1990년부터 2010년까지 대한민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고정자산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방정식을 추정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음
 - 모형에서 보듯이 이익이여금은 투자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은 현금흐름 모형과 배치되는 결과임
 - 한편 시간추세 변수는 1% 유의수준에서 투자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 반면, 사내유보과세 가변수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음

- 따라서 대한민국의 과거 자료를 사용하였을 때, 기업의 투자는 사내유보 과세제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음

<표 IV-4> 회귀분석 결과표 (종속변수: 고정자산)

독립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이익잉여금	-5.73E-1** (2.33E-1)	-6.26E-1*** (2.04E-1)	-4.78E-1** (2.24E-1)	-5.22E-1** (1.88E-1)
경제성장률	-2.96E8 (5.75E8)		-2.23E8 (5.82E8)	
시간	5.89E7*** (1.05E7)	6.29E7*** (7.07E6)	6.34E7*** (1.01E7)	6.63E7*** (6.59E6)
사내유보과세 가변수	-9.95E7 (7.96E7)	-9.53E7 (7.74E7)		
상수	1.40E8 (1.65E8)	7.48E7 (1.02E8)	8.07E6 (1.28E8)	-3.74E7 (4.72E7)
N	21	21	21	21
R ²	0.947	0.946	0.941	0.941
Adjusted R ²	0.933	0.936	0.931	0.934

***, **, * : 1%, 5%, 10%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3.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 시 주의사항

- 무엇보다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개인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의를 가진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목적으로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를 할 경우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가능성성이 클 것으로 평가됨

-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배당을 확대하게 됨
- 국내와 국외의 기존 연구들이 이와 같은 주장을 지지하고 있음

- 그러나 개인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하고 있는 적정초과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제도는 다음과 같은 단점을 가질 수 있음
- 무엇보다 적정유보에 대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행정상의 모호성을 극복하기 힘들다는 것을 단점으로 들 수 있음
 - 미국에서는 IRS가 개략적 기준만을 제시하고,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하도록 하고 있음
 - 즉, IRS가 적정유보를 초과하여 유보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 소를 제기하면 그 회사는 이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가짐
 - 많은 경우 기업이 승소하고 있음: 전체 소송 건수의 절반 정도만 IRS가 승소함
 - 이러한 이유로 조세행정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또한 전체적인 소송 비용도 많이 듣다는 단점이 있음
 -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는 추가적인 법인세 증가효과를 발휘하게 되므로, 법인의 해외 이주 가능성에 증가할 수 있음
 - 즉, 이와 같은 과세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에 소재하는 법인에 비해 과세제도가 존재하는 국가의 법인들이 추가적인 부담을 안게 되므로 외국에 회사를 두는 것이 유리함
- 한편,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제도를 사내유보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도입하게 된다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앞에서 보았듯이, 이와 같은 주장은 이론적·실증적 근거를 가짐
 - 특히 과거 우리나라의 자료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
- 이와는 달리,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제

도를 도입할 때에는 주의를 요함

- 앞 소절에서 고찰하였듯이,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기업의 투자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큽
- 단기적으로 투자를 촉진하는 경우에도 설비투자와 같은 바람직한 것뿐만 아니라 부동산 구입과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따라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단기적으로 투자를 촉진하고 장기적으로는 투자저하를 유발하므로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³¹⁾
- 사내유보에 대한 포괄적 과세보다는 특정 투자행위에 대해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
-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와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방안

V. 결론

□ 국내 전체기업을 기준으로 할 때, 사내유보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1990년부터 2001년까지는 대체적으로 5% 내외의 사내 유보율을 보여주고 있음
- 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폐지된 2002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3배 이상 유보율이 증가하였으며, 2008년 세계적인 금융 위기를 겪으며 잠시 주춤하였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31) 이 경우에도 조세제도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법인은 법에 의하여 인격을 부여받는 만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술 혁신으로 수익률이 높은 투자 기회를 발굴해 내고 투자를 확대하여 이익을 창출하도록 기대하는 것이 사회적 통념임
-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사내유보를 투자로 연결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음
- 먼저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법인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개인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제도임
 - 기업이 배당을 줄이고 사내유보를 하게 되면 개인소득세를 이연시키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므로, 사내유보는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
 - 이때 과소배당이 일어나게 됨
 -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이와 같은 사내유보를 통한 개인소득세 회피는 소유주가 다수인 공공기업(public firm)이 아니라 소유가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는 기업(private firm)에 나타날 가능성이 큼
 - 왜냐하면, 소유주가 많은 기업의 경우 배당을 함으로써 대리인 비용(agency cost)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과소 배당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임
 - 반면, 소수에게 소유가 집중된 기업의 경우에는 배당을 통한 대리인 비용의 절감보다는 사내유보를 통한 과세이연으로 인한 이득이 커지게 되므로 배당을 줄이고 사내유보를 하게 됨
-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과거에 이와 같은 목적으로 과다사내유보에 대한 과세제도가 도입된 적이 있음
 - 1990년 12월에 신설되었던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제도

는 2001년에 폐지되었음

- 대한민국에 도입되었던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제도가 비교적 단기간에 걸쳐 유지되었던 이유는 실효성이 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됨

- 이와 같이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개인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를 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
- 법인의 사내 유보금에 대해 과세제도가 개인소득세 회피를 방지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과는 별도로 법인의 행동에 여러 가지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음
 - 사내유보금 감소
 -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채무비율 감소)
 - 외부자금을 통한 자금조달 선호
- 따라서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제도를 사내유보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도입하게 된다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와는 달리,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주의를 요함
 -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투자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큼
- 그러므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단기적으로 투자를 촉진하고 장기적으로는 투자저하를 유발하므로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³²⁾
- 사내유보에 대한 포괄적 과세보다는 특정 투자행위에 대해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
-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와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방안

32) 이 경우에도 조세제도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참고문헌>

- 김원목(2007)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법리”, 「사법논집」, 제44집, pp. 207-250
- 양대석, 이병철(2001) 적정유보초과소득과 세제도의 실효성 연구, 국제회계연구, 제5집, 2001.11, pp. 87-111
- 유병룡(2007) 「적정유보초과소득세 폐지가 기업의 재무구조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 연도

- Aggarwal and Zong(2006), "The Cash flow-investment relationship; International evidence of Limited access to External finance", Journal of Multinational Financial Management 16; 89-104
- Aoun, Dany, Hwang J. (2008), "The Effects of cash flow and size on the Investment Decisions of ICT Firms: A Dynamic Approach," Information Economics and Policy 20: 120-134
- Baum, Christopher F. and Caglayan, M., Talavera, O. (2009), "On the Sensitivity of Firms' Investment to Cash Flow and Uncertainty," Oxford Economic Papers 62:286-306
- Cleary(1999), "The relationship between Firm investment and Financial status", Journal of Finance 54; 673-692
- Degryse and De Jong(2006), "Investment and Internal finance; Asymmetric Information or Managerial Discretion", Journal of Industrial Organization 24; 125-147
- George et. al(2011), "Investment-Cash flow Sensitivity and Financing constraints; New Evidence from Indian business group firms
- Goergen and Renneboog(2001), "Investment policy, Internal Financing and Ownership Concentration in the UK", Journal of Corporate Finance

Jorgenson(1963), "Capital theory and Investment behavior", American Economic Review 53

Kadapakkam et al.(1998), "The impact of Cash flows and Firm size on investment; The International Evidence",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Kaplan and Zingales(1997, 2000), "Do Investment-cash flow Sensitivities provide useful Measures of Financing constraint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2; 169–215

Lyandres, Evgeny (2007), "Costly External Financing, Investment Timing, and Investment-cash Flow Sensitivity," Journal of Corporate Finance, 13:959–980

Moyen, Nathalie (2004), "Investment-Cash Flow Sensitivities: Constrained Versus Unconstrained Firms," Journal of Finance, 5:2061–2092.

Moyen(2004), "Investment-cash flow sensitivities", Journal of Finance 59; 2061–2092

Ramesh K.S. Rao and Susan A. White, 1994, "The Dividend Payouts of Private Firms; Evidence from Tax Court Decisions", Journal of Financial Research, Winter1994, v.17, iss.4, pp.449~464

Tsoukalas(2011), "Essay on inventories, Credit constraints and Business cycle", Ph.D. Dissertation, Univ. of Maryland at College Park

<부록 1> 대한민국 법인세율의 변화

	일반법인(중소) 법인	공개(상장) 법인	비영리(학교) 법인
1971	100만원 이하 20%	100만원 이하 16%	100만원 이하 20%
	100만원 초과 30%	100만원 초과 20%	100만원 초과 30%
	500만원 초과 40%	500만원 초과 27%	500만원 초과 35%
1974	300만원 이하 20%	500만원 초과 20%	500만원 초과 20%
	300만원 초과 30%	500만원 초과 27%	500만원 초과 27%
	500만원 초과 40%		
1975		500만원 초과 20%	500만원 초과 20(15)%
		500만원 초과 27%	500만원 초과 27%
1976		500만원 초과 20(25)%	동일
		500만원 초과 27(33)%	
1978	300만원 이하 20(15)%		
	300만원 초과 30(25)%		동일
	500만원 초과 40(35)%		
1980	5천만원 이하 22%	5천만원 초과 25%	5천만원 초과 20%
	5천만원 이상 40%	5천만원 초과 33%	5천만원 초과 27%
	대주주 비중 35% 초과		
1981	5천만원 이하 22%	5천만원 초과 22%	동일
	5천만원 이상 38%	5천만원 초과 33%	공공법인 5%
	대주주 비중 35% 초과		
	일반법인 (비상장대기업)	비영리법인	공공법인
1982	5천만원 이하 20%	5천만원 초과 20%	
	5천만원 이상 30(33)%	5천만원 초과 27%	5%
1988	8천만원 이하 20%	8천만원 초과 20%	3억 원 이하 10%
	8천만원 이상 30(33)%	8천만원 초과 27%	3억 원 이상 15%
1990	1억 원 이하 20%		3억 원 이하 17%
	1억 원 이상 34%		3억 원 이상 25%
1993	1억 원 이하 18%		3억 원 이하
	1억 원 이상 32%		3억 원 이상
1994	1억 원 이하 18%		1억 원 이하
	1억 원 이상 30%		1억 원 이상
1995	1억 원 이하 16%		1억 원 이하
	1억 원 이상 28%		1억 원 이상
1997	1억 원 이하 16%		
	1억 원 이상 28%		
2001	1억 원 이하 15%		
	1억 원 이상 27%		
2005	1억 원 이하 13%		
	1억 원 이상 25%		
2008	2억 원 이하 11%		
	2억 원 이상 25%		
2009	2억 원 이하 11%		
	2억 원 이상 22%		
2010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이상 22%		
2012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이상 20% 예정		

<부록 2> 관련 일본법인세법

1. 일본 법인세법 제 20조는 동족회사의 정의를 명시하고 있음

二十 棚卸資産 商品、製品、半製品、仕掛品、原材料その他の資産で棚卸しをすべきものとして政令で定めるもの（有価証券及び第六十一条第一項（短期売買商品の譲渡損益及び時価評価損益の益金又は損金算入）に規定する短期売買商品を除く。）をいう。

2. 이하 조문은 특별세율의 과세기준이 되는 유보공제액의 산출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고 있음

内国法人である特定同族会社；

第六十七条 内国法人である特定同族会社（被支配会社で、被支配会社であることについての判定の基礎となつた株主等のうちに被支配会社でない法人がある場合には、当該法人をその判定の基礎となる株主等から除外して判定するものとした場合においても被支配会社となるもの（資本金の額又は出資金の額が一億円以下であるものを除く。）をいう。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の各事業年度の留保金額が留控除額を超える場合には、その特定同族会社に対して課する各事業年度の所得に対する法人税の額は、前条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これらの規定により計算した法人税の額に、その超える部分の留保金額を次の各号に掲げる金額に区分してそれぞれの金額に当該各号に定める割合を乗じて計算した金額の合計額を加算した金額とする。

- 一 年三千万円以下の金額 百分の十
- 二 年三千万円を超え、年一億円以下の金額 百分の十五
- 三 年一億円を超える金額 百分の二十

2 前項に規定する被支配会社とは、会社の株主等（その会社が自己の株式又は出資を有する場合のその会社を除く。）の一人並びにこれと政令で定める特殊の関係のある個人及び法人がその会社の発行済株式又は出資（その会社が有する自己の株式又は出資を除く。）の総数又は総額の百分の五十を超える数又は金額の株式又は出資を有する場合その他政令で定める場合におけるその会社をいう。

3 第一項に規定する留保金額とは、次に掲げる金額の合計額（第五項において「所得等の金額」という。）のうち留保した金額から、当該事業年度の所得の金額につき前条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り計算した法人税の額（次条から第七十条の二まで（税額控除）の規定により控除する金額がある場合には、当該金額を控除した金額）並びに当該法人税の額に係る地方税法の規定による道府県民税及び市町村民税（都民税を含む。）の額として政令で定めるところ

により計算した金額の合計額を控除した金額をいう。

一 当該事業年度の所得の金額（第六十二条第二項（合併及び分割による資産等の時価による譲渡）に規定する最後事業年度又は分割前事業年度にあつては、同項の規定を適用しないで計算した場合における所得の金額）

二 第二十三条（受取配当等の益金不算入）の規定により当該事業年度の所得の金額の計算上益金の額に算入されなかつた金額（連結法人である特定同族会社が他の連結法人（当該特定同族会社との間に連結完全支配関係があるものに限る。）から受ける配当等の額に係るものうち政令で定めるものを除く。）

三 第二十六条第一項（還付金等の益金不算入）に規定する還付を受け又は充当される金額（同項第一号に係る部分の金額を除く。）、同条第二項に規定する減額された部分として政令で定める金額、その受け取る附帯税（利子税を除く。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の負担額及び附帯税の負担額の減少額並びに同条第五項に規定する還付を受ける金額

四 第五十七条（青色申告書を提出した事業年度の欠損金の繰越し）、第五十八条（青色申告書を提出しなかつた事業年度の災害による損失金の繰越し）又は第五十九条（会社更生等による債務免除等があつた場合の欠損金の損金算入）の規定により当該事業年度の所得の金額の計算上損金の額に算入された金額

4 特定同族会社の前項に規定する留保した金額の計算については、当該特定同族会社による剰余金の配当又は利益の配当（その支払に係る決議の日がその支払に係る基準日の属する事業年度終了の日の翌日から当該基準日の属する事業年度に係る決算の確定の日までの期間内にあるもの（政令で定めるものを除く。）に限る。）の額（当該剰余金の配当又は利益の配当が金銭以外の資産によるものである場合には、当該資産の当該基準日の属する事業年度終了の時ににおける帳簿価額（当該資産が当該基準日の属する事業年度終了の日後に取得したものである場合にあつては、その取得価額）に相当する金額）は、当該基準日の属する事業年度に支払われたものとする

5 第一項に規定する留保控除額とは、次に掲げる金額のうち最も多い金額をいう。

一 当該事業年度の所得等の金額の百分の四十に相当する金額

二 年二千万円

三 当該事業年度終了の時における利益積立金額（当該事業年度の所得等の金額に係る部分の金額を除く。）がその時における資本金の額又は出資金の額の百分の二十五に相当する金額に満たない場合におけるその満たない部分の金額に相当する金額

6 事業年度が一年に満たない特定同族会社に対する第一項及び前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第一項中「年三千万円」とあるのは「三千万円を十二で除し、これに当該事業年度の月数を乗じて計算した金額」と、「年一億円」とあるのは「一億円を十二で除し、これに当該事業

年度の月数を乗じて計算した金額」と、前項中「年二千万円」とあるのは「二千万円を十二で除し、これに当該事業年度の月数を乗じて計算した金額」とする。

7 前項の月数は、暦に従つて計算し、一月に満たない端数を生じたときは、これを一月とする。

8 第一項の場合において、会社が同項の特定同族会社に該当するかどうかの判定は、当該会社の当該事業年度終了時の現況による。

9 第三項に規定する留保した金額から除く金額その他第一項から第五項までの規定の適用に関し必要な事項は、政令で定める。

第二款 税額控除

<부록 3> 미국 AET 관련 IRC 조문

Sec. 531. Imposition of accumulated earnings tax

In addition to other taxes imposed by this chapter, there is hereby imposed for each taxable year on the accumulated taxable income (as defined in section 535) of each corporation described in section 532, an accumulated earnings tax equal to 15 percent of the accumulated taxable income.

This section is referred to in sections 12, 26, 30A, 111, 532, 534, 535, 536, 545, 556, 563, 936, 1298, 6601, 7518 of this title; title 46 App. section 1177.

Sec. 12. Cross references relating to tax on corporations

- (1) For tax on the unrelated business income of certain charitable and other corporations exempt from tax under this chapter, see section 511.
- (2) For accumulated earnings tax and personal holding company tax, see parts I and II of subchapter G (sec. 531 and following).
- (3) For doubling of tax on corporations of certain foreign countries, see section 891.
- (4) For alternative tax in case of capital gains, see section 1201(a).
- (5) For rate of withholding in case of foreign corporations, see section 1442.
- (6) For limitation on benefits of graduated rate schedule provided in section 11(b), see section 1551.
- (7) For alternative minimum tax, see section 55.

Sec. 26. Limitation based on tax liability; definition of tax liability

(a) Limitation based on amount of tax

(1) In general

The aggregate amount of credits allowed by this subpart (other than sections 23, 24, and 25B) for the taxable year shall not exceed the excess (if any) of –

- (A) the taxpayer's regular tax liability for the taxable year, over
- (B) the tentative minimum tax for the taxable year (determined without regard to the alternative minimum tax foreign tax credit). For purposes of subparagraph (B), the taxpayer's tentative minimum tax for any taxable year beginning during 1999 shall be treated as being zero.

(2) Special rule for 2000, 2001, 2002, and 2003

For purposes of any taxable year beginning during 2000, 2001, 2002, or 2003, the aggregate amount of credits allowed by this subpart for the taxable year shall not exceed the sum of –

- (A) the taxpayer's regular tax liability for the taxable year reduced by the foreign tax credit allowable under section 27(a), and
- (B) the tax imposed by section 55(a) for the taxable year.

(b) Regular tax liability

For purposes of this part –

(1) In general

The term "regular tax liability" means the tax imposed by this chapter for the taxable year.

(2) Exception for certain taxes

For purposes of paragraph (1), any tax imposed by any of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not be treated as tax imposed by this chapter:

- (A) section 55 (relating to minimum tax),
- (B) section 59A (relating to environmental tax),
- (C) subsection (m)(5)(B), (q), (t), or (v) of section 72 (relating to additional taxes on certain distributions),
- (D) section 143(m) (relating to recapture of proration of Federal subsidy from use of mortgage bonds and mortgage credit certificates),
- (E) section 530(d)(3) (relating to additional tax on certain distributions from Coverdell education savings accounts),
- (F) section 531 (relating to accumulated earnings tax),
- (G) section 541 (relating to personal holding company tax),
- (H) section 1351(d)(1) (relating to recoveries of foreign expropriation losses),
- (I) section 1374 (relating to tax on certain built-in gains of S corporations),
- (J) section 1375 (relating to tax imposed when passive investment income of corporation having subchapter C earnings and profits exceeds 25 percent of gross receipts),
- (K) subparagraph (A) of section 7518(g)(6) (relating to nonqualified withdrawals from capital construction funds taxed at highest marginal rate),
- (L) sections 871(a) and 881 (relating to certain income of nonresident aliens and

- foreign corporations),
- (M) section 860E(e) (relating to taxes with respect to certain residual interests),
- (N) section 884 (relating to branch profits tax),
- (O) sections 453(l)(3) and 453A(c) (relating to interest on certain deferred tax liabilities),
- (P) section 860K (relating to treatment of transfers of high-yield interests to disqualified holders),
- (Q) section 220(f)(4) (relating to additional tax on Archer MSA distributions not used for qualified medical expenses), and
- (R) section 138(c)(2) (relating to penalty for distributions from Medicare+Choice1 MSA not used for qualified medical expenses if minimum balance not maintained).

(c) Tentative minimum tax

For purposes of this part, the term "tentative minimum tax" means the amount determined under section 55(b)(1).

Sec. 111. Recovery of tax benefit items

(a) Deductions

Gross income does not include income attributable to the recovery during the taxable year of any amount deducted in any prior taxable year to the extent such amount did not reduce the amount of tax imposed by this chapter.

(b) Credits

(1) In general

If –(A) a credit was allowable with respect to any amount for any prior taxable year, and (B) during the taxable year there is a downward price adjustment or similar adjustment, the tax imposed by this chapter for the taxable year shall be increased by the amount of the credit attributable to the adjustment.

(2) Exception where credit did not reduce tax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the extent that the credit allowable for the recovered amount did not reduce the amount of tax imposed by this chapter.

(3) Exception for investment tax credit and foreign tax credit

This subsection shall not apply with respect to the credit determined under section 46 and the foreign tax credit.

(c) Treatment of carryovers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an increase in a carryover which has not expired before the beginning of the taxable year in which the recovery or adjustment takes place shall be treated as reducing tax imposed by this chapter.

(d) Special rules for accumulated earnings tax and for personal holding company tax

In applying subsection (a)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accumulated earnings tax under section 531 or the tax under section 541 (relating to personal holding companies) –

- (1) any excluded amount under subsection (a) allowed for the purposes of this subtitle (other than section 531 or section 541) shall be allowed whether or not such amount resulted in a reduction of the tax under section 531 or the tax under section 541 for the prior taxable year; and
- (2) where any excluded amount under subsection (a) was not allowable as a deduction for the prior taxable year for purposes of this subtitle other than of section 531 or section 541 but was allowable for the same taxable year under section 531 or section 541, then such excluded amount shall be allowable if it did not result in a reduction of the tax under section 531 or the tax under section 541.

Sec. 532. Corporations subject to accumulated earnings tax

(a) General rule

The accumulated earnings tax imposed by section 531 shall apply to every corporation (other than those described in subsection (b)) formed or availed of for the purpose of avoiding the income tax with respect to its shareholders or the shareholders of any other corporation, by permitting earnings and profits to accumulate instead of being divided or distributed.

(b) Exceptions

The accumulated earnings tax imposed by section 531 shall not apply to –

- (1) a personal holding company (as defined in section 542),
- (2) a foreign personal holding company (as defined in section 552),
- (3) a corporation exempt from tax under subchapter F (section 501 and following), or
- (4) a 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y (as defined in section 1297).

(c) Application determined without regard to number of shareholders

The application of this part to a corporation shall be determined without regard to the

number of shareholders of such corporation.

Sec. 534. Burden of proof

(a) General rule

In any proceeding before the Tax Court involving a notice of deficiency based in whole or in part on the allegation that all or any part of the earnings and profits have been permitted to accumulate beyond the reasonable needs of the business, the burden of proof with respect to such allegation shall –

- (1) if notification has not been sent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 (b), be on the Secretary, or
- (2) if the taxpayer has submitted the statement described in subsection (c), be on the Secretary with respect to the grounds set forth in such statemen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such subsection.

(b) Notification by Secretary

Before mailing the notice of deficiency referred to in subsection (a), the Secretary may send by certified mail or registered mail a notification informing the taxpayer that the proposed notice of deficiency includes an amount with respect to the accumulated earnings tax imposed by section 531.

(c) Statement by taxpayer

Within such time (but not less than 30 days) after the mailing of the notification described in subsection (b) as the Secretary may prescribe by regulations, the taxpayer may submit a statement on the grounds (together with facts sufficient to show the basis thereof) on which the taxpayer relies to establish that all or any part of the earnings and profits have not been permitted to accumulate beyond the reasonable needs of the business.

(d) Jeopardy assessment

If pursuant to section 6861(a) a jeopardy assessment is made before the mailing of the notice of deficiency referred to in subsection (a),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such notice of deficiency shall, to the extent that it informs the taxpayer that such deficiency includes the accumulated earnings tax imposed by section 531, constitute the notification described in subsection (b), and in that event the statement described in subsection (c) may be included in the taxpayer's petition to the Tax Court.

Sec. 535. Accumulated taxable income

(a) Definition

For purposes of this subtitle, the term "accumulated taxable income" means the taxable income, adjusted in the manner provided in subsection (b), minus the sum of the dividends paid deduction (as defined in section 561) and the accumulated earnings credit (as defined in subsection (c)).

(b) Adjustments to taxable income

For purposes of subsection (a), taxable income shall be adjusted as follows:

(1) Taxes

There shall be allowed as a deduction Federal income and excess profits taxes and income, war profits, and excess profits taxes of foreign countries and possessions of the United States (to the extent not allowable as a deduction under section 275(a)(4)), accrued during the taxable year or deemed to be paid by a domestic corporation under section 902(a) or 960(a)(1) for the taxable year, but not including the accumulated earnings tax imposed by section 531, the personal holding company tax imposed by section 541, or the taxes imposed by corresponding sections of a prior income tax law.

(2) Charitable contributions

The deduction for charitable contributions provided under section 170 shall be allowed without regard to section 170(b)(2).

(3) Special deductions disallowed

The special deductions for corporations provided in part VIII (except section 248) of subchapter B (section 241 and following, relating to the deduction for dividends received by corporations, etc.) shall not be allowed.

(4) Net operating loss

The net operating loss deduction provided in section 172 shall not be allowed.

(5) Capital losses

(A) In general

Except as provided in subparagraph (B), there shall be allowed as a deduction an amount equal to the net capital loss for the taxable year (determined without regard to paragraph (7)(A)).

(B) Recapture of previous deductions for capital gains

The aggregate amount allowable as a deduction under subparagraph (A) for any

taxable year shall be reduced by the lesser of –

- (i) the nonrecaptured capital gains deductions, or
- (ii) the amount of the accumulated earnings and profits of the corporation as of the close of the preceding taxable year.

(C) Nonrecaptured capital gains deductions

For purposes of subparagraph (B), the term "nonrecaptured capital gains deductions" means the excess of –

- (i) the aggregate amount allowable as a deduction under paragraph (6) for preceding taxable years beginning after July 18, 1984, over
- (ii) the aggregate of the reductions under subparagraph (B) for preceding taxable years.

(6) Net capital gains

(A) In general

There shall be allowed as a deduction –

- (i) the net capital gain for the taxable year (determined with the application of paragraph (7)), reduced by
- (ii) the taxes attributable to such net capital gain.

(B) Attributable taxes

For purposes of subparagraph (A), the taxes attributable to the net capital gain shall be an amount equal to the difference between –

- (i) the taxes imposed by this subtitle (except the tax imposed by this part) for the taxable year, and
- (ii) such taxes computed for such year without including in taxable income the net capital gain for the taxable year (determined without the application of paragraph (7)).

(7) Capital loss carryovers

(A) Unlimited carryforward

The net capital loss for any taxable year shall be treated as a short-term capital loss in the next taxable year.

(B) Section 1212 inapplicable

No allowance shall be made for the capital loss carryback or carryforward provided in section 1212.

(8) Special rules for mere holding or investment companies

In the case of a mere holding or investment company –

(A) Capital loss deduction, etc., not allowed

Paragraphs (5) and (7)(A) shall not apply.

(B) Deduction for certain offsets

There shall be allowed as a deduction the net short-term capital gain for the taxable year to the extent such gain does not exceed the amount of any capital loss carryover to such taxable year under section 1212 (determined without regard to paragraph (7)(B)).

(C) Earnings and profits

For purposes of subchapter C, the accumulated earnings and profits at any time shall not be less than they would be if this subsection had applied to the computation of earnings and profits for all taxable years beginning after July 18, 1984.

(9) Special rule for capital gains and losses of foreign corporations

In the case of a foreign corporation, paragraph (6) shall be applied by taking into account only gains and losses which are effectively connected with the conduct of a trade or business within the United States and are not exempt from tax under treaty.

(c) Accumulated earnings credit

(1) General rule

For purposes of subsection (a), in the case of a corporation other than a mere holding or investment company the accumulated earnings credit is (A) an amount equal to such part of the earnings and profits for the taxable year as are retained for the reasonable needs of the business, minus (B) the deduction allowed by subsection (b)(6). For purposes of this paragraph, the amount of the earnings and profits for the taxable year which are retained is the amount by which the earnings and profits for the taxable year exceed the dividends paid deduction (as defined in section 561) for such year.

(2) Minimum credit

(A) In general

The credit allowable under paragraph (1) shall in no case be less than the amount by which \$250,000 exceeds the accumulated earnings and profits of the corporation at the close of the preceding taxable year.

(B) Certain service corporations

In the case of a corporation the principal function of which is the performance of

services in the field of health, law, engineering, architecture, accounting, actuarial science, performing arts, or consulting, subparagraph (A) shall be applied by substituting "\$150,000" for "\$250,000".

(3) Holding and investment companies

In the case of a corporation which is a mere holding or investment company, the accumulated earnings credit is the amount (if any) by which \$250,000 exceeds the accumulated earnings and profits of the corporation at the close of the preceding taxable year.

(4) Accumulated earnings and profits

For purposes of paragraphs (2) and (3), the accumulated earnings and profits at the close of the preceding taxable year shall be reduced by the dividends which under section 563(a) (relating to dividends paid after the close of the taxable year) are considered as paid during such taxable year.

(5) Cross reference

For denial of credit provided in paragraph (2) or (3) where multiple corporations are formed to avoid tax, see section 1551, and for limitation on such credit in the case of certain controlled corporations, see section 1561.

(d) Income distributed to United States-owned foreign corporation
retains United States connection

(1) In general

For purposes of this part, if 10 percent or more of the earnings and profits of any foreign corporation for any taxable year —

- (A) is derived from sources within the United States, or
- (B)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the conduct of a trade or business within the United States, any distribution out of such earnings and profits (and any interest payment) received (directly or through 1 or more other entities) by a United States-owned foreign corporation shall be treated as derived by such corporation from sources within the United States.

(2) United States-owned foreign corporation

The term "United States-owned foreign corporation" has the meaning given to such term by section 904(g)(6).

Sec. 536. Income not placed on annual basis

Section 443(b) (relating to computation of tax on change of annual accounting period) shall not apply in the computation of the accumulated earnings tax imposed by section 531.

Sec. 545. Undistributed personal holding company income

(a) Definition

For purposes of this part, the term "undistributed personal holding company income" means the taxable income of a personal holding company adjusted in the manner provided in subsections (b), (c), and (d), minus the dividends paid deduction as defined in section 561. In the case of a personal holding company which is a foreign corporation, not more than 10 percent in value of the outstanding stock of which is owned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958(a)) during the last half of the taxable year by United States persons, the term "undistributed personal holding company income" means the amount determined by multiplying the undistributed personal holding company income (determined without regard to this sentence) by the percentage in value of its outstanding stock which is the greatest percentage in value of its outstanding stock so owned by United States persons on any one day during such period.

(b) Adjustments to taxable income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 (a), the taxable income shall be adjusted as follows:

(1) Taxes

There shall be allowed as a deduction Federal income and excess profits taxes and income, war profits and excess profits taxes of foreign countries and possessions of the United States (to the extent not allowable as a deduction under section 275(a)(4)), accrued during the taxable year or deemed to be paid by a domestic corporation under section 902(a) or 960(a)(1) for the taxable year, but not including the accumulated earnings tax imposed by section 531, the personal holding company tax imposed by section 541, or the taxes imposed by corresponding sections of a prior income tax law.

(2) Charitable contributions

The deduction for charitable contributions provided under section 170 shall be allowed, but in computing such deduction the limitations in section 170(b)(1)(A), (B), and (D) shall apply, and section 170(b)(2) and (d)(1) shall not apply. For purposes of this

paragraph, the term "contribution base" when used in section 170(b)(1) means the taxable income computed with the adjustments (other than the 10-percent limitation) provided in section 170(b)(2) and (d)(1) and without deduction of the amount disallowed under paragraph (6) of this subsection.

(3) Special deductions disallowed

The special deductions for corporations provided in part VIII (except section 248) of subchapter B (section 241 and following, relating to the deduction for dividends received by corporations, etc.) shall not be allowed.

(4) Net operating loss

The net operating loss deduction provided in section 172 shall not be allowed, but there shall be allowed as a deduction the amount of the net operating loss (as defined in section 172(c)) for the preceding taxable year computed without the deductions provided in part VIII (except section 248) of subchapter B.

(5) Net capital gains

There shall be allowed as a deduction the net capital gain for the taxable year, minus the taxes imposed by this subtitle attributable to such net capital gain. The taxes attributable to such net capital gain shall be an amount equal to the difference between (A) the taxes imposed by this subtitle (except the tax imposed by this part) for such year, and

(B) such taxes computed for such year without including such excess in taxable income.

(6) Expenses and depreciation applicable to property of the taxpayer

The aggregate of the deductions allowed under section 162 (relating to trade or business expenses) and section 167 (relating to depreciation), which are allocable to the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property owned or operated by the corporation, shall be allowed only in an amount equal to the rent or other compensation received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the property, unless it is established (under regulations prescribed by the Secretary) to the satisfaction of the Secretary —

- (A) that the rent or other compensation received was the highest obtainable, or, if none was received, that none was obtainable;
- (B) that the property was held in the course of a business carried on bona fide for profit; and
- (C) either that there was reasonable expectation that the operation of the property

would result in a profit, or that the property was necessary to the conduct of the business.

(7) Special rule for capital gains and losses of foreign corporations

In the case of a foreign corporation, paragraph (5) shall be applied by taking into account only gains and losses which are effectively connected with the conduct of a trade or business within the United States and are not exempt from tax under treaty.

(c) Certain foreign corporations

In the case of a foreign corporation all of the outstanding stock of which during the last half of the taxable year is owned by nonresident alien individuals (whether directly or indirectly through foreign estates, foreign trusts, foreign partnerships, or other foreign corporations), the taxable income for purposes of subsection (a) shall be the income which constitutes personal holding company income under section 543(a)(7), reduced by the deductions attributable to such income, and adjusted, with respect to such income, in the manner provided in subsection (b).

Sec. 563. Rules relating to dividends paid after close of taxable year

(a) Accumulated earnings tax

In the determination of the dividends paid deduction for purposes of the accumulated earnings tax imposed by section 531, a dividend paid after the close of any taxable year and on or before the 15th day of the third month following the close of such taxable year shall be considered as paid during such taxable year.

(b) Personal holding company tax

In the determination of the dividends paid deduction for purposes of the personal holding company tax imposed by section 541, a dividend paid after the close of any taxable year and on or before the 15th day of the third month following the close of such taxable year shall, to the extent the taxpayer elects in its return for the taxable year, be considered as paid during such taxable year. The amount allowed as a dividend by reason of the application of this subsection with respect to any taxable year shall not exceed either —

- (1) The undistributed personal holding company income of the corporation for the taxable year, computed without regard to this subsection, or
- (2) 20 percent of the sum of the dividends paid during the taxable year, computed without regard to this subsection.

(c) Foreign personal holding company tax

(1) In general

In the determination of the dividends paid deduction for purposes of part III, a dividend paid after the close of any taxable year and on or before the 15th day of the 3rd month following the close of such taxable year shall, to the extent the company designates such dividend as being taken into account under this subsection, be considered as paid during such taxable year. The amount allowed as a deduction by reason of the application of this subsection with respect to any taxable year shall not exceed the undistributed foreign personal holding company income of the corporation for the taxable year computed without regard to this subsection.

(2) Special rules

In the case of any distribu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

- (A) paragraph (1) shall apply only if such distribution is to the person who was the shareholder of record (as of the last day of the taxable year of the foreign personal holding company) with respect to the stock for which such distribution is made,
- (B) the determination of the person required to include such distribution in gross income shall be made under the principles of section 551(f), and
- (C) any person required to include such distribution in gross or distributable net income shall include such distribution in income for such person's taxable year in which the taxable year of the foreign personal holding company ends.

(d) Dividends considered as paid on last day of taxable year

For the purpose of applying section 562(a), with respect to distributions under subsection (a), (b), or (c) of this section, a distribution made after the close of a taxable year and on or before the 15th day of the third month following the close of the taxable year shall be considered as made on the last day of such taxable year.

